

제337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1월24일(화)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학 박물관 진흥법안
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4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9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이벤트산업발전법안
1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취재원 보호법안
1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3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3.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44.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
14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자동차경주법안
1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스포츠기본법안
16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안홍준·강은희·이재영·이노근·윤명희·김명연·류지영·김한표·김태원 의원 발의) 15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한표·박창식·서청원·이만우·이우현·이에리사·이채익·이한성·홍철호 의원 발의) 15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장실·김한표·박창식·서청원·신경림·이만우·이우현·이에리사·이채익·이한성·홍철호 의원 발의) 15
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세연·이한성·황인자·서상기·함진규·심재철·정갑윤·김정록·김태환 의원 발의) 15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찬열·김윤덕·박홍근·안민석·이목희·박민수·민홍철·김상희·이개호·유기홍·도중환 의원 발의) 15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윤덕·김우남·강창일·이상직·김성곤·박민수·김영록·인재근·황주홍 의원 발의) 15
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김한표·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15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박맹우·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15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진선미·김용익·김성곤·박주선·이찬열·전순옥·주승용·김현·최동익·임수경 의원 발의) 15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진선미·김용익·김성곤·박주선·이찬열·전순옥·주승용·김현·최동익·임수경 의원 발의) 16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황주홍·이개호·진성준·정진후·원혜영·최민희·이찬열·변재일·김광진·유인태·유승희·박남춘·김우남·김상희·부좌현 의원 발의) 16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홍문표·주영순·최규성·정희수·박명재·송영근·이한성·신정훈·이병석 의원 발의) 16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관석·김광진·임수경·이개호·정진후·배재정·설훈·조정식·김성주 의원 발의) 16
14. 대학 박물관 진흥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정진후·박홍근·배재정·도중환·김태년·설훈·박주선·안민석·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16
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인재근·정진후·유은혜·김태년·유기홍·이학영·박혜자·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16
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중환 의원 대표발의)(도중환·인재근·정진후·유은혜·김태년·유기홍·이학영·박혜자·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16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김관영·김상희·이개호·조정식·김광진·박홍근·정진후·이상직·김태년·박남춘·남인순·홍의락·유은혜·안규백·도중환·정청래·설훈 의원 발의) 16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 의원 대표발의)(송호창·인재근·김영록·윤관석·김민기·강창일·주승용·홍익표·이원욱·우상호 의원 발의) 16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개호·박홍근·유은혜·도중환·정진후·설훈·유기홍·서기호·정호준·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89) 16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서청원·이우현·민홍철·서상기·박명재·박인숙·이운룡·이종배·김상민·서용교 의원 발의) 16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6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6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주홍·류지영·이종배·이주영·이한성·유의동·이강후·민홍철·이정현·조원진·박맹우 의원 발의) 16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기준·배재정·김성곤·황주홍·정진후·임수경·김광진·변재일·홍종학 의원 발의) 16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용익·정진후·정청래·박홍근·

- 유성엽·김성곤·배재정·유기홍·김상희·조정식·김승남·유승희 의원 발의) 16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용익·정진후·정청래·박홍근·유성엽·김성곤·배재정·유기홍·김상희·조정식·김승남·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13) 16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현재·조명철·김기선·정수성·이종배·강은희·김한표·이한성·권성동·강기윤·이재영 의원 발의) 16
2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류지영·이한성·원유철·윤명희·이재오·노철래·이종진·김세연·이자스민 의원 발의) 16
2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만우·민홍철·양창영·정용기·이한성·조명철·나경원·강기윤·박성호 의원 발의) 17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홍근·심상정·이개호·정호준·이찬열·김윤덕·신경민·장하나·진선미·이미경 의원 발의) 17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홍근·김관영·심상정·이개호·정호준·김윤덕·백재현·신경민·장하나·진성준·진선미·이미경 의원 발의) 17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도종환·조정식·인재근·김상희·박홍근·이목희·정진후·유기홍·배재정·안민석 의원 발의) 17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재원·김종태·김태원·김현숙·류지영·문대성·박창식·송영근·이자스민·이학재·홍철호 의원 발의) 17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이찬열·최규성·진성준·박홍근·인재근·안규백·신경민·김윤덕·김관영·진선미 의원 발의) 17
3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김태원·안규백·김민기·송영근·김성곤·주영순·이찬열·최규성 의원 발의) 17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홍철호·이만우·이종배·송영근·강석호·정갑윤·김제식·이학재·주호영 의원 발의) 17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황주홍·양승조·배재정·김윤덕·박주선·조정식·박홍근·강동원 의원 발의) 17
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황주홍·양승조·배재정·김윤덕·박주선·조정식·박홍근·강동원 의원 발의) 17
3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안규백·최재성·이개호·부좌현·배재정·백재현·유기홍·정진후·최동익·안민석 의원 발의) 17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노근·이우현·조정태·이진복·홍지만·박대동·김한표·이현재·노철래 의원 발의) 17
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조정식·박홍근·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김상희·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17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조정식·박홍근·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김상희·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17
4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서상기·이철우·염동열·신성범·김현숙·박대출·강석호·신동우·신경림 의원 발의) 17
44.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서상기·이철우·염동열·신성범·김현숙·박대출·강석호·신동우·신경림 의원 발의) 17
4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김제남·서기호·박원석·안민석·도종환·유은혜·유기홍·설훈·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 17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혜영·김

춘진·송호창·강창일·부좌현·박홍근·김성곤·권은희·이찬열 의원 발의) 17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설훈·안민석·이찬열·배재정·김성주·전순옥·박주선·유기홍·최재성·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9) 17

4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민석·이찬열·배재정·김성주·전순옥·박주선·유기홍·최재성·한정애 의원 발의) 17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윤덕·김현·도종환·배재정·백재현·안민석·유은혜·정세균·최동익 의원 발의) 18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광진·김우남·민홍철·박홍근·배재정·신기남·이개호·전병헌·정진후·정청래·최동익·황주홍 의원 발의) 18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18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18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18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18

5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박홍근·윤관석·안민석·이찬열·김윤덕·전순옥·유성엽·도종환·이학영·조정식·이미경·김현·유은혜·김태년·설훈 의원 발의) 18

5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최동익·황주홍·이개호·유기홍·조정식·백재현·임내현·김광진·도종환·박남춘 의원 발의) 18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서상기·정병국·홍일표·김동완·배덕광·이군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운조 의원 발의) 18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진성준·박홍근·조정식·정진후·임수경·김영록·장하나·최규성·박혜자·안민석·김동철 의원 발의) 18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이개호·황주홍·부좌현·배재정·김광진·박홍근·유승희·민홍철·최재성·전해철 의원 발의) 18

6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황주홍·정청래·홍일표·박민수·강창일·이개호·신경민·박남춘·김광진·박홍근·유승희 의원 발의) 18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정진후·이한성·배덕광·염동열·심학봉·이우현·윤재옥·김종태·김태원·이종훈 의원 발의) 18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정진후·이한성·배덕광·염동열·심학봉·이우현·윤재옥·김종태·김태원·이종훈 의원 발의) 18

6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광진·도종환·박광은·박홍근·배재정·부좌현·이개호·전병헌·정세균·정진후·정청래·최동익·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18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세균·안규백·김광진·박남춘·신기남·김성곤·이상직·민홍철·김영록 의원 발의) 18

6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18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이개호·김기준·배재정·박남춘·황주홍·안규백·김성곤·정호준·박홍근 의원 발의) 18

6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황주홍·민홍철·박홍근·이개호·노웅래·부좌현·유승희·강동원·정청래 의원 발의) 18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윤재욱 · 한선교 · 박인숙 · 유재중 · 이종훈 · 신성범 · 홍지만 · 김희선 · 정수성 · 김을동 · 김재경 의원 발의) 18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한명숙 · 전병헌 · 김태년 · 윤관석 · 박주선 · 도중환 · 박홍근 · 유기홍 · 임수경 의원 발의) 18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유은혜 · 한명숙 · 정호준 · 김윤덕 · 배재정 · 전순옥 · 홍익표 · 이찬열 · 박주선 · 조정식 · 정진후 · 김태년 · 도중환 · 박민수 · 임수경 · 박홍근 · 진선미 · 이목희 · 박광온 · 김현 · 안민석 · 우원식 의원 발의) 19
7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유의동 · 최봉홍 · 김용남 · 길정우 · 김태호 · 송영근 · 정용기 · 민홍철 · 김장실 의원 발의) 19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임수경 · 안민석 · 윤관석 · 진성준 · 정진후 · 조정식 · 전병헌 · 이개호 · 도중환 · 김태년 의원 발의) 19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19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이개호 · 황주홍 · 안규백 · 조정식 · 김성곤 · 이목희 · 인재근 · 민홍철 · 김광진 · 박남춘 · 홍익표 · 오영식 · 안민석 의원 발의) 19
75.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진성준 · 박홍근 · 조정식 · 정진후 · 임수경 · 김영록 · 장하나 · 최규성 · 김관영 · 박혜자 의원 발의) 19
7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 · 한선교 · 전하진 · 김영우 · 송영근 · 유승우 · 김명연 · 심윤조 · 이노근 · 홍문종 의원 발의) 19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박민수 · 이찬열 · 이한성 · 김우남 · 황주홍 · 민홍철 · 박수현 · 이개호 · 전정희 의원 발의) 19
7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 김성곤 · 남인순 · 양승조 · 이미경 · 박남춘 · 이학영 · 황주홍 · 김태년 · 정청래 · 안규백 · 이상직 · 신경민 · 이목희 의원 발의) 19
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81.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설훈 · 이개호 · 조정식 · 김태년 · 도중환 · 진성준 · 정진후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19
8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설훈 · 이개호 · 조정식 · 김태년 · 도중환 · 진성준 · 정진후 · 임수경 · 박홍근 의원 발의) 19
8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강기정 · 부좌현 · 김현 · 백재현 · 진성준 · 최민희 · 박민수 · 박남춘 · 정성호 의원 발의) 19
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장병완 · 김동철 · 임내현 · 설훈 · 박홍근 · 윤관석 · 안민석 · 정성호 · 정진후 · 도중환 의원 발의) 19
8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윤재욱 · 강은희 · 염동열 · 한선교 · 박인숙 · 이상일 · 안홍준 · 유재중 · 이종훈 · 김희선 의원 발의) 19
8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 · 류지영 · 윤재욱 · 황인자 · 신동우 · 유승우 · 김명연 · 김을동 · 정미경 · 이재영 · 김도읍 의원 발의) 19
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유기홍 · 배재정 · 김용익 · 황주홍 · 이찬열 · 전순옥 · 정진후 · 도중환 · 윤관석 · 한정애 의원 발의) 19
8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 · 이연주 · 이춘석 · 김현미 · 안규백 · 윤후덕 · 임수경 · 김관영 · 김경협 · 이상직 의원 발의) 19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김동철 · 임내현 · 장병

완 · 이개호 · 김관영 · 김영록 · 김경협 · 이석현 · 유인태 · 김승남 의원 발의)	19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황인자 · 이종진 · 장정은 · 김영록 · 김제식 · 김재원 · 이에리사 · 문정림 · 김을동 · 정희수 의원 발의)	20
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성곤 · 김종태 · 류지영 · 서용교 · 신상진 · 이종배 · 정성호 · 홍지만 · 황주홍 의원 발의)	20
9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희국 · 변재일 · 경대수 · 주승용 · 이철우 · 김관영 · 이완영 · 이노근 · 이정현 의원 발의)	20
94.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이개호 · 유인태 · 장병완 · 이찬열 · 김윤덕 · 최규성 · 윤호중 · 원혜영 · 정세균 의원 발의)	20
9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윤명희 · 이한성 · 주호영 · 이채익 · 강기윤 · 박대동 · 정갑윤 · 김태호 · 이만우 의원 발의)	20
96.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조원진 · 전순옥 · 윤관석 · 최규성 · 김태년 · 배재정 · 박홍근 · 추미애 · 김영록 · 설훈 · 이원욱 · 도종환 · 황인자 · 함진규 · 박완주 · 홍철호 · 윤후덕 · 강석호 · 강창일 · 이개호 · 이운룡 · 김한표 · 유의동 의원 발의)	20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진성준 · 이상호 · 김현미 · 이학영 · 김기식 · 홍종학 · 정진후 · 이원욱 · 박혜자 의원 발의)	20
9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이찬열 · 노영민 · 김태년 · 이상직 · 김성곤 · 조정식 · 전병헌 · 김윤덕 · 배재정 · 유기홍 · 설훈 · 김재경 · 이상민 · 이춘석 · 김우남 의원 발의)	20
99.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도종환 · 유기홍 · 설훈 · 배재정 · 정진후 · 윤관석 · 안민석 · 김성주 · 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22)	20
10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0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장운석 · 심재철 · 배덕광 · 한선교 · 송영근 · 나성린 · 염동열 · 이노근 · 정문헌 의원 발의)	20
10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 · 한선교 · 정갑윤 · 유의동 · 민홍철 · 홍지만 · 정문헌 · 정희수 · 김성곤 · 이주영 · 이한성 · 이자스민 의원 발의)	20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 · 박대동 · 김을동 · 김기준 · 김용태 · 정수성 · 이운룡 · 김상민 · 신동우 · 이학영 의원 발의)	20
104. 경륜 · 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05.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06. 이벤트산업발전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부좌현 · 이원욱 · 김춘진 · 유성엽 · 박민수 · 이찬열 · 최규성 · 이상직 · 정호준 의원 발의)	20
1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이개호 · 윤관석 · 임내현 · 이목희 · 강동원 · 안규백 · 김영록 · 신정훈 · 이종걸 · 박광온 의원 발의)	20
10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이종진 · 이에리사 · 김희국 · 정희수 · 김기선 · 황인자 · 함진규 · 이노근 · 김을동 의원 발의)	20
1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유기홍 · 서영교 · 안민석 · 김용익 · 진성준 · 유성엽 · 김태년 · 정진후 · 김광진 · 설훈 의원 발의)	20
1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홍철호 · 김도읍 · 김세연 · 문정림 · 박명재 · 김을동 · 박인숙 · 황인자 · 최봉홍 의원 발의)	20
1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상훈 · 박대출 · 박창식 · 서청원 · 윤영석 · 이만우 · 이우현 · 이채익 · 정갑윤 의원 발의)	20

113.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신학용·이학영·박홍근·윤관석·정병국·김기준·부좌현·신기남·이미경·유은혜·배재정·백재현·조정식·임수경·최민희·이석현·설훈·김우남·김성주·이개호·황주홍·이해찬·이주영·정진후·진성준·원혜영·이상호·김관영·김성곤·유기홍·박병석·강기정·안규백·민홍철·추미애·박원석 의원 발의) 20
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 21
1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조정식·유기홍·조경태·김광진·이인영·인재근·이원욱·안민석·도종환·김상희·유성엽 의원 발의) 21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개호·김용익·정진후·정청래·김태년·안민석·최동익·조정식·한정애·양승조·이목희·원혜영·김기식·이미경·김관영·김광진 의원 발의) 21
1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장윤석·경대수·주영순·서용교·이종훈·김희선·박창식·김도읍·김재경·홍문표·박덕흠·이인제·민현주·김상훈 의원 발의) 21
11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유승우·김동완·홍지만·김한표·이종진·박윤옥·김기선·이장우·이우현 의원 발의) 21
1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21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21
1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권성동·김영우·김용남·나경원·양창영·이강후·이철우·정미경·조명철·주호영·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21
1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21
123. 취재원 보호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전병헌·조정식·이개호·박주선·김태년·황주홍·안민석·정진후·한명숙·강동원·설훈·김광진·박혜자·김상희·최동익·윤관석·박홍근·이목희·유승희·김성곤 의원 발의) 21
1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강길부·최봉홍·신성범·권성동·이진복·김을동·양창영·조명철·안홍준·강은희·염동열·박성호·박맹우·이한성·장윤석 의원 발의) 21
1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도종환·조정식·인재근·김기식·김상희·박홍근·이목희·정진후·유기홍·배재정·안민석 의원 발의) 21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응래 의원 대표발의)(노응래·전병헌·이개호·최재성·강동원·민홍철·김상희·김성곤·부좌현·박남춘·조정식·유승희·정청래 의원 발의) 21
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강석훈·강기윤·홍일표·이한성·유의동·황인자·이재영·이자스민 의원 발의) 21
1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오영식·박홍근·부좌현·조정식·박민수·최재성·정청래·전순옥·박주선·이목희 의원 발의) 21
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박남춘·이개호·양승조·박홍근·정호준·한명숙·유은혜·유기홍·진선미·유승희·이상호·김상희·이목희·정청래·김제남 의원 발의) 21
1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개호·박민수·박남춘·김성곤·이상직·김민기·유성엽·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21
1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진·이개호·이찬열·박민수·

	부좌현 · 유승희 · 조정식 · 최동익 · 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94)	22
1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전순옥 · 이개호 · 부좌현 · 진선미 · 박주선 · 박수현 · 진성준 · 김기준 · 노용래 · 임수경 · 김상희 · 유승희 · 정청래 의원 발의)	22
13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박명재 · 송영근 · 신의진 · 김장실 · 최봉홍 · 류지영 · 정용기 · 이채익 · 신경림 의원 발의)	22
1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이노근 · 류지영 · 한선교 · 이한성 · 박민식 · 유의동 · 박맹우 · 이상일 · 조명철 의원 발의)	22
1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장병완 · 김윤덕 · 박주선 · 윤관석 · 임내현 · 김영록 · 김동철 · 설훈 · 김민기 의원 발의)	22
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기선 · 김태호 · 윤명희 · 윤영석 · 이만우 · 이채익 · 정갑윤 · 정문헌 · 함진규 의원 발의)	22
1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기선 · 김태호 · 윤명희 · 윤영석 · 이만우 · 이채익 · 정갑윤 · 정문헌 · 함진규 의원 발의)	22
13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함진규 · 이명수 · 김진태 · 황영철 · 박덕흠 · 김명연 · 김한표 · 강석호 · 강기윤 의원 발의)	22
13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홍익표 · 박홍근 · 황주홍 · 조정식 · 안규백 · 이인영 · 박수현 · 인재근 · 강기정 · 설훈 의원 발의)	22
14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정진후 · 신기남 · 조정식 · 박홍근 · 우원식 · 진선미 · 이학영 · 설훈 · 배재정 · 이목희 · 유기홍 · 박주선 · 김상희 · 인재근 · 도종환 · 이인영 · 김현미 · 안민석 의원 발의)	22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 · 정진후 · 조정식 · 설훈 · 배재정 · 이목희 · 유기홍 · 박주선 · 인재근 · 도종환 · 이인영 · 김현미 · 안민석 의원 발의)	22
14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박수현 · 부좌현 · 이찬열 · 이개호 · 양승조 · 원혜영 · 조정식 · 임수경 · 은수미 의원 발의)	22
143.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 · 이개호 · 박홍근 · 정진후 · 윤관석 · 양승조 · 김태년 · 김광진 · 신기남 · 한명숙 · 이목희 · 유기홍 · 최동익 · 박완주 의원 발의)	22
144.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 · 김명연 · 김세연 · 신성범 · 윤재옥 · 이상일 · 정두언 · 이재영 · 이이재 · 민현주 · 김상민 · 이한성 의원 발의)	22
14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 · 류지영 · 이노근 · 이채익 · 김태호 · 양창영 · 홍지만 · 이우현 · 김희선 · 한선교 · 배재정 · 이진복 · 신성범 · 백군기 · 이상일 의원 발의)	22
1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이종배 · 서상기 · 정병국 · 홍일표 · 김동완 · 배덕광 · 이군현 · 홍지만 · 이우현 · 김을동 · 심윤조 의원 발의)	22
1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개호 · 조정식 · 김성곤 · 안민석 · 부좌현 · 전병헌 · 오제세 · 이학영 · 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82)	22
148.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 · 황인자 · 권성동 · 원유철 · 문정림 · 한기호 · 김을동 · 함진규 · 김태원 · 류지영 · 이한구 · 홍철호 · 김도읍 의원 발의)	22
14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광진 · 김우남 · 박홍근 · 배재정 · 부좌현 · 이개호 · 이학영 · 전병헌 · 정세균 · 정진후 · 정청래 · 최민희 · 최재성 · 황주홍 의원	

발의)	22
150. 자동차경주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이개호·이윤석·김광진·김성곤·박민수·박주선·문병호·부좌현·이한성·김우남·정세균·서영교·김승남·박혜자·김영록·홍의락·신정훈·임내현·박지원·주승용·유인태·이춘석·장병완·유은혜·박수현·김희국·홍영표·김영환·박기춘·우윤근·전해철·조정식·김성주·노웅래·박남춘·신기남·김윤덕·이언주·주영순·박대출·최원식·조정태·박상은·홍문표·양창영·신동우·김정록·유승우·백근기·노영민·정용기 의원 발의)	22
1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이노근·송영근·손인춘·박맹우·김상훈·조명철·이명수·김태완·이자스민 의원 발의)	23
1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이개호·조정식·박민수·부좌현·민홍철·유성엽·이찬열·인재근·이언주 의원 발의)	23
15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이개호·조정식·김성곤·박민수·부좌현·민홍철·유성엽·이찬열·인재근·김광진 의원 발의)	23
15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전병헌·안민석·양승조·홍익표·전순옥·배재정·안홍준·김현·원혜영·이찬열·정성호·권성동·김승남 의원 발의)	23
15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조정식·김성곤·김우남·유성엽·정용기·김광진·문병호·김춘진 의원 발의)	23
1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강기윤·김태원·박창식·유승우·최봉홍·홍지만·유성엽·박명재·이학재 의원 발의)	23
15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박덕흠·김재경·김도읍·서용교·홍지만·강기윤·길정우·이학재·이상일 의원 발의)	23
1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강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23
15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1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전하진·박성호·강석훈·손인춘·이만우·정병국·김정훈·정세균·윤영석·박명재 의원 발의)	23
16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양창영·하태경·이현재·최봉홍·이장우·김명연·홍문표·김정록·안상수·김상민 의원 발의)	23
1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이윤석·주승용·장병완·강기정·이개호·김동철·임내현·박지원·權垠希·김성곤·황주홍·김영록·박주선 의원 발의)	23
1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김현·이원욱·장하나·김경협·한명숙·김기준·진성준·인재근·박주선 의원 발의)	23
16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경협·박광운·박주선·배재정·설훈·원혜영·유은혜·조정식·최동익 의원 발의)	23
1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권성동·황영철·함진규·이이재·김명연·김상민·문대성·김진태·박창식 의원 발의)	23
16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167.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윤명희·양창영·김동완·홍지만·이우현·서상기·서용교·주호영·배덕광·정병국 의원 발의)	23
16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김성곤·김춘진·박범계·송호창·신정훈·이개호·주승용·최규성·황주홍 의원 발의)	23
1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23

1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선미 · 최동익 · 강동원 · 이목희 · 우원식 · 이인영 · 송호창 · 김승남 · 최규성 · 윤관석 의원 발의)	23
1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선미 · 최동익 · 강동원 · 이목희 · 우원식 · 이인영 · 송호창 · 김승남 · 최규성 · 윤관석 의원 발의)	24
1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한성 · 이만우 · 신성범 · 조정대 · 유재중 · 이채익 · 김동완 · 진영 · 서용교 의원 발의)	24
17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이한성 · 이만우 · 유재중 · 이채익 · 김동완 · 신성범 · 서용교 · 신경림 · 나성린 의원 발의)	24
1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윤관석 · 김관영 · 박광온 · 우윤근 · 김현미 · 안규백 · 도종환 · 황주홍 · 유성엽 · 박홍근 · 이개호 · 설훈 · 김용익 · 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62)	24
175.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설훈 · 이개호 · 배재정 · 황주홍 · 강창일 · 박수현 · 김태년 · 홍익표 · 박남춘 · 이목희 · 박홍근 · 김성곤 의원 발의)	24
1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윤관석 · 김관영 · 박광온 · 우윤근 · 김현미 · 안규백 · 김태년 · 도종환 · 황주홍 · 설훈 · 김용익 · 전해철 · 이찬열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73)	24
1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 · 인재근 · 원혜영 · 김광진 · 김성곤 · 전해철 · 박지원 · 박범계 · 전병헌 · 박광온 의원 발의)	24
17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배재정 · 추미애 · 신정훈 · 이찬열 · 변재일 · 진성준 · 박홍근 · 이목희 · 김관영 · 이개호 · 전병헌 · 김영록 · 장병완 의원 발의)	24
1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이찬열 · 노영민 · 김성곤 · 조정식 · 전병헌 · 정진후 · 김제남 · 최규성 · 김관영 의원 발의)	24
1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부좌현 · 이개호 · 오영식 · 정호준 · 이원욱 · 강기정 · 임수경 · 박수현 · 은수미 의원 발의)	24
18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광진 · 박원석 · 서영교 · 신경민 · 이개호 · 임수경 · 정갑윤 · 정진후 · 황주홍 의원 발의)	24
18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4
1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김춘진 · 천정배 · 설훈 · 황주홍 · 안규백 · 이개호 · 김성곤 · 주승용 · 김영록 · 김동철 · 이상민 의원 발의)	24
1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이개호 · 한정애 · 이상직 · 박민수 · 이원욱 · 김관영 · 이찬열 · 노영민 · 김민기 의원 발의)	24
1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이학영 · 배재정 · 김태년 · 안민석 · 박주선 · 박혜자 · 김상희 · 정진후 · 김현미 · 유기홍 · 유은혜 의원 발의)	24
18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관영 · 김기준 · 김성곤 · 김승남 · 김우남 · 송호창 · 오제세 · 전병헌 · 황주홍 의원 발의)	24
18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김관영 · 김기준 · 김성곤 · 김승남 · 김우남 · 송호창 · 오제세 · 전병헌 · 황주홍 의원 발의)	24
1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김상훈 · 유재중 · 홍지만 · 서용교 · 유의동 · 김한표 · 이재영 · 강은희 · 염동열 · 이우현 · 이장우 의원 발의)	24
18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도읍 · 박대출 · 박창식 · 서청원 · 윤영석 · 이만우 · 이우현 · 이채익 · 정갑윤 의원 발의)	24
19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 · 윤관석 · 정진후 · 조정식 · 박홍근 · 김태년 · 이미경 · 배재정 · 유은혜 · 유인태 · 임수경 의원 발의)	24

19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배재정·김춘진·최규성·박민수·이개호·정세균·전정희·강동원·김관영·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 25

1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장병완·김윤덕·박주선·윤관석·임내현·김영록·김동철·설훈·김민기·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27) 25

19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장병완·김윤덕·박주선·윤관석·임내현·김영록·김동철·설훈·김민기·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66) 25

19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1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1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현·이개호·장병완·정청래·김민기·박홍근·김태년·최규성·신기남·임내현·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25

1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김관영·박홍근·김윤덕·김민기·이윤석·김영록·김성곤·조정식·안규백·임내현 의원 발의) 25

1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황영철·서용교·김희선·양창영·박덕흠·이병석·김도읍·이종배·정용기 의원 발의) 25

19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25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황우여 부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한 시간 정도 후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상정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개 법안의 경우는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현재 소위원회에 심사 중인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서 간사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부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안홍준·강은희·이재영·이노근·윤명희·김명연·류지영·김한표·김태원 의원 발의)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한표·박창식·

서청원·이만우·이우현·이에리사·이채익·이한성·홍철호 의원 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장실·김한표·박창식·서청원·신경립·이만우·이우현·이에리사·이채익·이한성·홍철호 의원 발의)
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김세연·이한성·황인자·서상기·함진규·심재철·정갑윤·김정록·김태환 의원 발의)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찬열·김윤덕·박홍근·안민석·이목희·박민수·민홍철·김상희·이개호·유기홍·도종환 의원 발의)
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윤덕·김우남·강창일·이상직·김성곤·박민수·김영록·인재근·황주홍 의원 발의)
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김한표·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김태원·김명연·황인자·유승우·이재영·박맹우·김태환·강기윤·경대수 의원 발의)
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진선미·김용익·김

- 성곤·박주선·이찬열·전순옥·주승용·김현·최동익·임수경 의원 발의)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진선미·김용익·김성곤·박주선·이찬열·전순옥·주승용·김현·최동익·임수경 의원 발의)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황주홍·이개호·진성준·정진후·원혜영·최민희·이찬열·변재일·김광진·유인태·유승희·박남춘·김우남·김상희·부좌현 의원 발의)
 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홍문표·주영순·최규성·정희수·박명재·송영근·이한성·신정훈·이병석 의원 발의)
 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윤관석·김광진·임수경·이개호·정진후·배재정·설훈·조정식·김성주 의원 발의)
 14. **대학 박물관 진흥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정진후·박홍근·배재정·도종환·김태년·설훈·박주선·안민석·유은혜·박혜자 의원 발의)
 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인재근·정진후·유은혜·김태년·유기홍·이학영·박혜자·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인재근·정진후·유은혜·김태년·유기홍·이학영·박혜자·박홍근·설훈 의원 발의)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김관영·김상희·이개호·조정식·김광진·박홍근·정진후·이상직·김태년·박남춘·남인순·홍의락·유은혜·안규백·도종환·정청래·설훈 의원 발의)
 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 의원 대표발의)(송호창·인재근·김영록·윤관석·김민기·강창일·주승용·홍익표·이원욱·우상호 의원 발의)
 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이개호·박홍근·유은혜·도종환·정진후·설훈·유기홍·서기호·정호준·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89)
 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서청원·이우현·민홍철·서상기·박명재·박인숙·이운룡·이종배·김상민·서용교 의원 발의)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양창영·황주홍·류지영·이종배·이주영·이한성·유의동·이강후·민홍철·이정현·조원진·박맹우 의원 발의)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기준·배재정·김성곤·황주홍·정진후·임수경·김광진·변재일·홍종학 의원 발의)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용익·정진후·정청래·박홍근·유성엽·김성곤·배재정·유기홍·김상희·조정식·김승남·유승희 의원 발의)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용익·정진후·정청래·박홍근·유성엽·김성곤·배재정·유기홍·김상희·조정식·김승남·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13)
 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현재·조명철·김기선·정수성·이종배·강은희·김한표·이한성·권성동·강기윤·이재영 의원 발의)
 28.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류지영·이한성·원유철·윤명희·이재오·노철래·이종진·김세연·이자스민 의원 발의)

2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이만우·민홍철·양창영·정용기·이한성·조명철·나경원·강기윤·박성호 의원 발의)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홍근·심상정·이개호·정호준·이찬열·김윤덕·신경민·장하나·진선미·이미경 의원 발의)
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박홍근·김관영·심상정·이개호·정호준·김윤덕·백재현·신경민·장하나·진성준·진선미·이미경 의원 발의)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도종환·조정식·인재근·김상희·박홍근·이목희·정진후·유기홍·배재정·안민석 의원 발의)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김재원·김종태·김태원·김현숙·류지영·문대성·박창식·송영근·이자스민·이학재·홍철호 의원 발의)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이찬열·최규성·진성준·박홍근·인재근·안규백·신경민·김윤덕·김관영·진선미 의원 발의)
3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유성엽·김태원·안규백·김민기·송영근·김성곤·주영순·이찬열·최규성 의원 발의)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홍철호·이만우·이종배·송영근·강석호·정갑윤·김제식·이학재·주호영 의원 발의)
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황주홍·양승조·배재정·김윤덕·박주선·조정식·박홍근·강동원 의원 발의)
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박남춘·황주홍·양승조·배재정·김윤덕·박주선·조정식·박홍근·강동원 의원 발의)
3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안규백·최재성·이개호·부좌현·배재정·백재현·유기홍·정진후·최동익·안민석 의원 발의)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노근·이우현·조경태·이진복·홍지만·박대동·김한표·이현재·노철래 의원 발의)
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조정식·박홍근·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김상희·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4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조정식·박홍근·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김상희·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4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서상기·이철우·염동열·신성범·김현숙·박대출·강석호·신동우·신경림 의원 발의)
44.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서상기·이철우·염동열·신성범·김현숙·박대출·강석호·신동우·신경림 의원 발의)
4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심상정·김제남·서기호·박원석·안민석·도종환·유은혜·유기홍·설훈·박남춘·박홍근 의원 발의)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원혜영·김춘진·송호창·강창일·부좌현·박홍근·김성곤·권은희·이찬열 의원 발의)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설훈·안민석·이찬열·배재정·김성주·전순옥·박주선·유기홍·최재성·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9)
4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민석·이찬열·배재정·김성주·전순옥·박주선·유기홍·최재성·한정애 의원 발의)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윤덕·김현·도종환·배재정·백재현·안민석·유은혜·정세균·최동익 의원 발의)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광진·김우남·민홍철·박홍근·배재정·신기남·이개호·전병헌·정진후·정청래·최동익·황주홍 의원 발의)
5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강동원·김광진·노영민·박원석·박주선·박홍근·우원식·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5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박홍근·윤관석·안민석·이찬열·김윤덕·전순옥·유성엽·도종환·이학영·조정식·이미경·김현·유은혜·김태년·설훈 의원 발의)
5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최동익·황주홍·이개호·유기홍·조정식·백재현·임내현·김광진·도종환·박남춘 의원 발의)
5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서상기·정병국·홍일표·김동완·배덕광·이군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윤조 의원 발의)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진성준·박홍근·조정식·정진후·임수경·김영록·장하나·최규성·박혜자·안민석·김동철 의원 발의)
5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이개호·황주홍·부좌현·배재정·김광진·박홍근·유승희·민홍철·최재성·전해철 의원 발의)
6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황주홍·정청래·홍익표·박민수·강창일·이개호·신경민·박남춘·김광진·박홍근·유승희 의원 발의)
6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정진후·이한성·배덕광·염동열·심학봉·이우현·윤재욱·김종태·김태원·이종훈 의원 발의)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정진후·이한성·배덕광·염동열·심학봉·이우현·윤재욱·김종태·김태원·이종훈 의원 발의)
6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광진·도종환·박광운·박홍근·배재정·부좌현·이개호·전병헌·정세균·정진후·정청래·최동익·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세균·안규백·김광진·박남춘·신기남·김성곤·이상직·민홍철·김영록 의원 발의)
6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배덕광·류지영·이자스민·문대성·최봉홍·윤영석·이상일·김도읍·김제식 의원 발의)
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이개호·김기준·배재정·박남춘·황주홍·안규백·김성곤·정호준·박홍근 의원 발의)
6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황주홍·민홍철·박홍근·이개호·노웅래·부좌현·유승희·강동원·정청래 의원 발의)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윤재욱·한선교·박인숙·유재중·이종훈·신성범·홍지만·김희선·정수성·김을동·김재경 의원 발의)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한

- 명숙·전병헌·김태년·윤관석·박주선·도종환·박홍근·유기홍·임수경 의원 발의)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유은혜·한명숙·정호준·김윤덕·배재정·전순옥·홍익표·이찬열·박주선·조정식·정진후·김태년·도종환·박민수·임수경·박홍근·진선미·이목희·박광운·김현·안민석·우원식 의원 발의)
7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유의동·최봉홍·김용남·길정우·김태호·송영근·정용기·민홍철·김장실 의원 발의)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임수경·안민석·윤관석·진성준·정진후·조정식·전병헌·이개호·도종환·김태년 의원 발의)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신경림·유의동·강석훈·송영근·권성동·심윤조·손인춘·장은희·유재중 의원 발의)
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이개호·황주홍·안규백·조정식·김성곤·이목희·인재근·민홍철·김광진·박남춘·홍익표·오영식·안민석 의원 발의)
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진성준·박홍근·조정식·정진후·임수경·김영록·장하나·최규성·김관영·박혜자 의원 발의)
7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한선교·전하진·김영우·송영근·유승우·김명연·심윤조·이노근·홍문중 의원 발의)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박민수·이찬열·이한성·김우남·황주홍·민홍철·박수현·이개호·전정희 의원 발의)
7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김성곤·남인순·양승조·이미경·박남춘·이학영·황주홍·김태년·정청래·안규백·이상직·신경민·이목희 의원 발의)
8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설훈·이개호·조정식·김태년·도종환·진성준·정진후·임수경·박홍근 의원 발의)
8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설훈·이개호·조정식·김태년·도종환·진성준·정진후·임수경·박홍근 의원 발의)
8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강기정·부좌현·김현·백재현·진성준·최민희·박민수·박남춘·정성호 의원 발의)
8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장병완·김동철·임내현·설훈·박홍근·윤관석·안민석·정성호·정진후·도종환 의원 발의)
8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윤재옥·강은희·염동열·한선교·박인숙·이상일·안홍준·유재중·이중훈·김희선 의원 발의)
8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신의진·류지영·윤재옥·황인자·신동우·유승우·김명연·김을동·정미경·이재영·김도읍 의원 발의)
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기홍·배재정·김용익·황주홍·이찬열·전순옥·정진후·도종환·윤관석·한정애 의원 발의)
8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이연주·이춘석·김현미·안규백·윤후덕·임수경·김관영·김경협·이상직 의원 발의)
8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김동철·임내현·장병완·이개호·김관영·김영록·김경협·이석현·유인태·김승남 의원 발의)

- 9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황인자 · 이종진 · 장정은 · 김정록 · 김제식 · 김재원 · 이에리사 · 문정림 · 김을동 · 정희수 의원 발의)
- 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성곤 · 김종태 · 류지영 · 서용교 · 신상진 · 이종배 · 정성호 · 홍지만 · 황주홍 의원 발의)
- 9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김희국 · 변재일 · 경대수 · 주승용 · 이철우 · 김관영 · 이완영 · 이노근 · 이정현 의원 발의)
- 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 · 이개호 · 유인태 · 장병완 · 이찬열 · 김윤덕 · 최규성 · 윤호중 · 원혜영 · 정세균 의원 발의)
- 9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윤명희 · 이한성 · 주호영 · 이채익 · 강기윤 · 박대동 · 정갑윤 · 김태호 · 이만우 의원 발의)
- 96.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 · 조원진 · 전순옥 · 윤관석 · 최규성 · 김태년 · 배재정 · 박홍근 · 추미애 · 김영록 · 설훈 · 이원욱 · 도종환 · 황인자 · 함진규 · 박완주 · 홍철호 · 윤후덕 · 강석호 · 강창일 · 이개호 · 이운룡 · 김한표 · 유의동 의원 발의)
-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진성준 · 우상호 · 김현미 · 이학영 · 김기식 · 홍종학 · 정진후 · 이원욱 · 박혜자 의원 발의)
- 9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이찬열 · 노영민 · 김태년 · 이상직 · 김성곤 · 조정식 · 전병헌 · 김윤덕 · 배재정 · 유기홍 · 설훈 · 김재경 · 이상민 · 이춘석 · 김우남 의원 발의)
- 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도종환 · 유기홍 · 설훈 · 배재정 · 정진후 · 윤관석 · 안민석 · 김성주 · 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22)
- 10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이에리사 · 장운석 · 심재철 · 배덕광 · 한선교 · 송영근 · 나성린 · 염동열 · 이노근 · 정문헌 의원 발의)
- 1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 · 한선교 · 정갑윤 · 유의동 · 민홍철 · 홍지만 · 정문헌 · 정희수 · 김성곤 · 이주영 · 이한성 · 이자스민 의원 발의)
- 1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 · 박대동 · 김을동 · 김기준 · 김용태 · 정수성 · 이운룡 · 김상민 · 신동우 · 이학영 의원 발의)
- 10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5.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6. **이벤트산업발전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부좌현 · 이원욱 · 김춘진 · 유성엽 · 박민수 · 이찬열 · 최규성 · 이상직 · 정호준 의원 발의)
- 1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 · 이개호 · 윤관석 · 임내현 · 이목희 · 강동원 · 안규백 · 김영록 · 신정훈 · 이종걸 · 박광온 의원 발의)
- 10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이종진 · 이에리사 · 김희국 · 정희수 · 김기선 · 황인자 · 함진규 · 이노근 · 김을동 의원 발의)
- 1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 · 유기홍 · 서영교 · 안민석 · 김용익 · 진성준 · 유성엽 · 김태년 · 정진후 · 김광진 · 설훈 의원 발의)
- 1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홍철호 · 김도읍 · 김세연 · 문정림 · 박명재 · 김을동 · 박인숙 · 황인자 · 최봉홍 의원 발의)
- 1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상훈 · 박대출 · 박창식 · 서청원 · 윤영석 · 이만우 · 이우현 · 이채익 · 정갑윤 의원 발의)
- 113.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신학용·이학영·박홍근·윤관석·정병국·김기준·부좌현·신기남·이미경·유은혜·배재정·백재현·조정식·임수경·최민희·이석현·설훈·김우남·김성주·이개호·황주홍·이해찬·이주영·정진후·진성준·원혜영·우상호·김관영·김성곤·유기홍·박병석·강기정·안규백·민홍철·추미애·박원석 의원 발의)

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강은희·이우현·이완영·홍지만·유승우·김상민·서상기·김성태·김진태·정갑윤 의원 발의)

1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조정식·유기홍·조정태·김광진·이인영·인재근·이원욱·안민석·도종환·김상희·유성엽 의원 발의)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개호·김용익·정진후·정청래·김태년·안민석·최동익·조정식·한정애·양승조·이목희·원혜영·김기식·이미경·김관영·김광진 의원 발의)

1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장윤석·경대수·주영순·서용교·이종훈·김희선·박창식·김도읍·김재경·홍문표·박덕흠·이인제·민현주·김상훈 의원 발의)

118.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유승우·김동완·홍지만·김한표·이종진·박윤옥·김기선·이장우·이우현 의원 발의)

1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추미애·전순옥·심재권·최민희·윤관석·박남춘·김기식·김광진·조정식·양승조 의원 발의)

1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권성동·김영우·김용남·나경원·양창영·이강

후·이철우·정미경·조명철·주호영·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1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123. 취재원 보호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전병헌·조정식·이개호·박주선·김태년·황주홍·안민석·정진후·한명숙·강동원·설훈·김광진·박혜자·김상희·최동익·윤관석·박홍근·이목희·유승희·김성곤 의원 발의)

1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박창식·강길부·최봉홍·신성범·권성동·이진복·김을동·양창영·조명철·안홍준·강은희·염동열·박성호·박맹우·이한성·장윤석 의원 발의)

12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도종환·조정식·인재근·김기식·김상희·박홍근·이목희·정진후·유기홍·배재정·안민석 의원 발의)

1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병헌·이개호·최재성·강동원·민홍철·김상희·김성곤·부좌현·박남춘·조정식·유승희·정청래 의원 발의)

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송영근·강석훈·강기윤·홍일표·이한성·유의동·황인자·이재영·이자스민 의원 발의)

1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오영식·박홍근·부좌현·조정식·박민수·최재성·정청래·전순옥·박주선·이목희 의원 발의)

1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박남춘·이개호·양승조·박홍근·정호준·한명숙·유은혜·유기홍·진선미·유승희·우상호·김상희·이목희·정청래·김제남 의원 발의)

1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개호·박민수·박남춘·김성곤·이상직·김민기·유성엽·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1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진·이개호·이찬열·박민수·부좌현·유승희·조정식·최동익·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94)
13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순옥·이개호·부좌현·진선미·박주선·박수현·진성준·김기준·노용래·임수경·김상희·유승희·정청래 의원 발의)
13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박명재·송영근·신의진·김장실·최봉홍·류지영·정용기·이채익·신경림 의원 발의)
1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노근·류지영·한선교·이한성·박민식·유의동·박맹우·이상일·조명철 의원 발의)
1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장병완·김윤덕·박주선·윤관석·임내현·김영록·김동철·설훈·김민기 의원 발의)
1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현·함진규 의원 발의)
13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기선·김태호·윤명희·윤영석·이만우·이채익·정갑윤·정문현·함진규 의원 발의)
13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함진규·이명수·김진태·황영철·박덕흠·김명연·김한표·강석호·강기윤 의원 발의)
13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홍익표·박홍근·황주홍·조정식·안규백·이인영·박수현·인재근·강기정·설훈 의원 발의)
14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신기남·조정식·박홍근·우원식·진선미·이학영·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김상희·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정진후·조정식·설훈·배재정·이목희·유기홍·박주선·인재근·도종환·이인영·김현미·안민석 의원 발의)
14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수현·부좌현·이찬열·이개호·양승조·원혜영·조정식·임수경·은수미 의원 발의)
143.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배재정·이개호·박홍근·정진후·윤관석·양승조·김태년·김광진·신기남·한명숙·이목희·유기홍·최동익·박완주 의원 발의)
144.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이종훈·김명연·김세연·선성범·윤재옥·이상일·정두언·이재영·이이재·민현주·김상민·이한성 의원 발의)
14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서용교·류지영·이노근·이채익·김태호·양창영·홍지만·이우현·김희선·한선교·배재정·이진복·선성범·백군기·이상일 의원 발의)
1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종배·서상기·정병국·홍일표·김동완·배덕광·이군현·홍지만·이우현·김을동·심윤조 의원 발의)
1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개호·조정식·김성곤·안민석·부좌현·전병헌·오제세·이학영·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82)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문대성·황인자·권성동·원유철·문정림·한기호·김을동·함진규·김태원·류지영·이한구·홍철호·김도읍 의원 발의)
14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광진·김우남·박홍근·배재정·부좌현·이개호·이학영·전병헌·정세균·정진후·정청래·최민희·최재성·황주홍 의원 발의)
150. **자동차경주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황주홍 · 유성엽 · 이개호 · 이윤석 · 김광진 · 김성곤 · 박민수 · 박주선 · 문병호 · 부좌현 · 이한성 · 김우남 · 정세균 · 서영교 · 김승남 · 박혜자 · 김영록 · 홍의락 · 신정훈 · 임내현 · 박지원 · 주승용 · 유인태 · 이춘석 · 장병완 · 유은혜 · 박수현 · 김희국 · 홍영표 · 김영환 · 박기춘 · 우윤근 · 전해철 · 조정식 · 김성주 · 노웅래 · 박남춘 · 신기남 · 김윤덕 · 이언주 · 주영순 · 박대출 · 최원식 · 조경태 · 박상은 · 홍문표 · 양창영 · 신동우 · 김정록 · 유승우 · 백근기 · 노영민 · 정용기 의원 발의)
- 15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노근 · 송영근 · 손인춘 · 박맹우 · 김상훈 · 조명철 · 이명수 · 김태완 · 이자스민 의원 발의)
- 1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이개호 · 조정식 · 박민수 · 부좌현 · 민홍철 · 유성엽 · 이찬열 · 인재근 · 이언주 의원 발의)
- 15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이개호 · 조정식 · 김성곤 · 박민수 · 부좌현 · 민홍철 · 유성엽 · 이찬열 · 인재근 · 김광진 의원 발의)
- 15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 · 전병헌 · 안민석 · 양승조 · 홍익표 · 전순옥 · 배재정 · 안홍준 · 김현 · 원혜영 · 이찬열 · 정성호 · 권성동 · 김승남 의원 발의)
- 15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이개호 · 조정식 · 김성곤 · 김우남 · 유성엽 · 정용기 · 김광진 · 문병호 · 김춘진 의원 발의)
- 15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강기윤 · 김태원 · 박창식 · 유승우 · 최봉홍 · 홍지만 · 유성엽 · 박명재 · 이학재 의원 발의)
- 15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 · 박덕흠 · 김재경 · 김도읍 · 서용교 · 홍지만 · 강기윤 · 길정우 · 이학재 · 이상일 의원 발의)
- 15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 · 신경림 · 유의동 · 강석훈 · 송영근 · 권성동 · 심윤조 · 손인춘 · 강은희 · 유재중 의원 발의)
- 15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전하진 · 박성호 · 강석훈 · 손인춘 · 이만우 · 정병국 · 김정훈 · 정세균 · 윤영석 · 박명재 의원 발의)
- 16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 · 양창영 · 하태경 · 이현재 · 최봉홍 · 이장우 · 김명연 · 홍문표 · 김정록 · 안상수 · 김상민 의원 발의)
- 16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이윤석 · 주승용 · 장병완 · 강기정 · 이개호 · 김동철 · 임내현 · 박지원 · 權垠希 · 김성곤 · 황주홍 · 김영록 · 박주선 의원 발의)
- 1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김현 · 이원욱 · 장하나 · 김경협 · 한명숙 · 김기준 · 진성준 · 인재근 · 박주선 의원 발의)
- 16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김경협 · 박광운 · 박주선 · 배재정 · 설훈 · 원혜영 · 유은혜 · 조정식 · 최동익 의원 발의)
- 1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 · 권성동 · 황영철 · 함진규 · 이이재 · 김명연 · 김상민 · 문대성 · 김진태 · 박창식 의원 발의)
- 16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7.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윤명희 · 양창영 · 김동완 · 홍지만 · 이우현 · 서상기 · 서용교 · 주호영 · 배덕광 · 정병국 의원 발의)
- 16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 · 김성곤 · 김춘진 · 박범계 · 송호창 · 신정훈 · 이개호 · 주승용 · 최규성 · 황주홍 의원 발의)
- 1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선미 · 최동익 · 강동원 · 이목희 · 우원식 · 이인영 · 송호창 · 김승남 · 최규성 · 윤관석 의원 발의)
- 1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진선미 · 최동익 · 강동원 · 이목희 · 우원식 · 이인영 · 송호창 · 김승남 · 최규성 · 윤관석 의원 발의)

1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1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만우·신성범·조경태·유재중·이채익·김동완·진영·서용교 의원 발의)
17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이만우·유재중·이채익·김동완·신성범·서용교·신경림·나성린 의원 발의)
1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윤관석·김관영·박광온·우윤근·김현미·안규백·도종환·황주홍·유성엽·박홍근·이개호·설훈·김용익·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62)
175.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설훈·이개호·배재정·황주홍·강창일·박수현·김태년·홍익표·박남춘·이목희·박홍근·김성곤 의원 발의)
1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윤관석·김관영·박광온·우윤근·김현미·안규백·김태년·도종환·황주홍·설훈·김용익·전해철·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73)
1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원혜영·김광진·김성곤·전해철·박지원·박범계·전병헌·박광온 의원 발의)
17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정호준·배재정·추미애·신정훈·이찬열·변재일·진성준·박홍근·이목희·김관영·이개호·전병헌·김영록·장병완 의원 발의)
1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이찬열·노영민·김성곤·조정식·전병헌·정진후·김제남·최규성·김관영 의원 발의)
1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부좌현·이개호·오영식·정호준·이원욱·강기정·임수경·박수현·은수미 의원 발의)
181.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광진·박원석·서영교·신경민·이개호·임수경·정갑윤·정진후·황주홍 의원 발의)
18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발의)
1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이개호·한정애·이상직·박민수·이원욱·김관영·이찬열·노영민·김민기 의원 발의)
1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이학영·배재정·김태년·안민석·박주선·박혜자·김상희·정진후·김현미·유기홍·유은혜 의원 발의)
18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김관영·김기준·김성곤·김승남·김우남·송호창·오제세·전병헌·황주홍 의원 발의)
18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김관영·김기준·김성곤·김승남·김우남·송호창·오제세·전병헌·황주홍 의원 발의)
1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김상훈·유재중·홍지만·서용교·유의동·김한표·이재영·강은희·염동열·이우현·이장우 의원 발의)
18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도읍·박대출·박창식·서청원·윤영석·이만우·이우현·이채익·정갑윤 의원 발의)
19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윤관석·정진후·조정식·박홍근·김태년·이미경·배재정·유은혜·유인태·임수경 의원 발의)

- 19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배재정·김춘진·최규성·박민수·이개호·정세균·전정희·강동원·김관영·이상직·유성엽 의원 발의)
- 1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장병완·김윤덕·박주선·윤관석·임내현·김영록·김동철·설훈·김민기·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27)
- 19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장병완·김윤덕·박주선·윤관석·임내현·김영록·김동철·설훈·김민기·김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66)
- 19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현·이개호·장병완·정청래·김민기·박홍근·김태년·최규성·신기남·임내현·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 1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김관영·박홍근·김윤덕·김민기·이윤석·김영록·김성곤·조정식·안규백·임내현 의원 발의)
- 1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황영철·서용교·김희선·양창영·박덕흠·이병석·김도읍·이종배·정용기 의원 발의)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8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9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9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10시46분)

○**위원장 박주선**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99항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서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박한 법안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제정법률안 및 2건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양 간사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생략대상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에 명시돼 있는 10건의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래도 이것 끝나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려고?

○**유기홍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김종태 의원 제안설명 끝나고 하시면 안 돼? 외부 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님한테는 예의인데, 임수경 의원도 그러시고.

○**유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존경하옵는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인구 비율이 전국 24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경북 상주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국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경북 상주시의 경우 농업인구 비율이 49.5%이고, 제주 서귀포시 43.5, 전남 나주시 37.4, 전북 김제시 36.7, 경북 문경시 33.8% 등으로 전형적인 농어촌 도

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해당지역 학생들은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행정구역상 군은 읍·면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농어업 종사자가 3분의 1 미만인 46개 군의 경우에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10% 미만 군도 특별전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의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입 특별전형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의 인구 중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 지역도—즉 시가 되겠습니다—시의 동 지역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며 2010년까지 6년간 낙후지역 육성방안으로 상주, 문경, 안동, 태백, 삼척, 남원, 김제, 정읍, 나주 등 9개 시의 경우 동 지역을 포함한 고교 졸업생 전원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은 각종 FTA와 시장 개방 등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도시에 비해 소득도 적고 변변한 시설 보습학원조차도 없어 교육의 불모지라는 오명과 함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면서 어찌면 교육 문제가 우리 농촌의 붕괴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종사자 인구비율이 가장 많은 경북 상주시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교육 문제로 인해 우리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고 차별받고 나아가 농촌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6항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임수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발전, 국가 간 FTA 추진 등으로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신흥시장 국가로의 진출 및 전략적 자원외교와 공공외교의 대상 국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끊임 없이 신흥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시장이 열리고 신흥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특수지역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특수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언어 교육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정책은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으며, 제2외국어의 경우도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소수 특정지역 외국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역시 일부 대학과 사설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특수지역 언어의 공적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 기반을 강화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제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한 한류 확산 및 선진 외교 활동 증진을 통한 국익과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수지역 언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국

가적 핵심 역량입니다. 특수지역 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국가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수지역 언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 마련된 본 법률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임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기홍 위원 먼저 2016년 예산안이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상임위 의결 없이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의되지 못한 예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임기 반을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한 푼도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또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7개 사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를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등 6개 사업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 공약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 원을 국고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예산 2461억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역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황우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황우여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처우개선, 특히 명절휴가비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 ‘재정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지급 노력’이라는 부대의견을 예결위에 보내기로 했는데 그나마도 오늘 의결도 못한 상태로 예결위에 보내게 돼서 예결특위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교문위의 노력을 과연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 의심스럽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인 문구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바라건대 부대의견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로 수정해서 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가 부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미합의 사항 때문에 결국 의결 없이 예결특위로 보내게 됐는데, 예를 들면 학교 영양사 면허수당 그리고 고전번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전번역원 인건비 문제 등을 포함해서 지금 예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렀던 사항도 이제 아무런 강제력 없이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결 없이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된 우리 교문위 예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미합의된 것,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과정도 해결책 찾아야지요. 그 노력을 다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오늘 예산 의결 못 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지금 유기홍 위원님께서 상임위 관련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고 예결위로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의결 무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교문위가 계속 진통을 겪었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예산소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일정들 다 뒤로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 또 누리과정 및 고교 무상교육 예산, 심지어 대학평가지원사업에서 총장 선출방식 연계 관련된 부대의견까지 정부와 여당은 조금도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국회가 경시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는 광주 사업이 아닙니다. 이 건 국책사업인데 정부와 여당에서 증액에 대해서, 증액도 원래 문체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관련 상임위에서는 얼마든지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증액에 동의가 되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이 예산만큼은 다른 법과 이 예산을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정부에서 증액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점은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만 8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경우를, 여당에서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켜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처음 봅니다. 특히나 그것도 예결위도 아니고 상임위에서조차도 이렇게 연계 전략을 쓰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큰 실망과 함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법안들이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안건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하고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설령 숙려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넘겨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낸 법안들조차도 의결 안건으로 못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협량함을 지금 여당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아주 깊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제 국편에서 47명 국사교과서 집필진 숫자만

공개를 했는데요. 집필진 명단, 소속, 전공을 오후 상임위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날 장관께서 국정화 확정고시 기자회견을 할 때 '집필부터 발행까지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이미 대국민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 집필진 명단을 제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후까지 집필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혜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혜자 위원 제가 지난 7월 13일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님께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특별 관련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거해서 아특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국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 위원장께서 동의하셨고 허락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행정입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아문단의 직제 등과 관련한 아특별 개정안이 오늘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하고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도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안건에 좀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가 있어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법 9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검토의 결과물을 지금 즉시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문위원에게 지시하셔서 그동안 4개월 동안에 걸쳐서 검토했던 행정입법의 검토결과를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직권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행정입법 검토를 오늘 안건에 추가 상정해 주시든지, 법안소위에서 제가 발의한 아특별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직권상정하세요.

○**박혜자 위원** 올려 주세요. 그냥 나온 검토결과 보고서니까 한 것은 말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주선** 우선 박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관행이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소위에 상정하는 시점에 검토보고서를 제공한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합의가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이 보류가 돼 가지고……

○**박혜자 위원** 오늘 됐습니다.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보고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 박주선** 그 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아니에요?

○**박혜자 위원** 아니요,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행령,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시행령이 특별법하고 취지가 맞지 않는다, 직제나 규정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고,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특별법과 시행령 간에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실의 보고서. 보고서를 지금 즉시 상임위 위원님들께……

○**위원장 박주선** 98조의2 4항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기본적으로는 안전의 상정을 전제로 해서……

○**위원장 박주선** 그건 국회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뭘 전제로 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일반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검토보고서를 썼으면 나눠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주선** 국회법 98조의2 4항에 의하면 배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이걸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가지고 속히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김태년 위원** 그게 무슨 안전상정이 왜 필요해요?

○**신성범 위원** 아니, 이건 행정입법에 관한 거거든.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입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잖아요.

○**신성범 위원**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한 검토를 시켰으면 개인적으로 해서 받아서 박 위원님께서 활용하시는 건 몰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느냐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박혜자 위원**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 박주선** 국회법 98조의2 3·4항을 보면 법안 상정 요건과는 결부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해석상으로 보더라도 배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지도 모르니까 이걸 검토해 가지고 바로 오전회의 내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위원** 우리 여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안이 의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같은 동료 상임위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결소위에서 예산 하셨던 분들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라는 사실상 현재까지 의결이 안 된 것은 교육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보여 줬던 교육부의 온갖 꼼수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방식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우리 위원들도 놀라고 국민들도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찬성의견에 대한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까지도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좌관은 열람을 해 줬으면서 위원들 열람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예고가 됩니까?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행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를 위한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의혹들을 갖다가 감감이 행정으로 지금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어제 국편이 집필진 구성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미루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자료 제공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47명의 중·고등학교 구분한 집필자 수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 집필진 비공개, 시대별 집필자 수조차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 집필진으로 인접학문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인접학문 전문가가 됩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비전문가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더욱이 교육부장관과, 지금 황우여 장관 안 나오셨는데, 김정배 국편위원장이 수차례 집필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인지 국사정보원인지, 이 집필진이 국사정보원의 에이전트인지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비비 등 예산내역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국정도서 기본계획 예산 항목을 백지로 제출하는 등의 기만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밀실운영 동승동 비공개 TF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정식 출범한 이후에도 소속 직원명단, 업무분장 현황 이런 부분들, 사무실 전화번호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다 자료제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시 강하게 추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바로세우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과연 그걸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원통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제 발표한 국편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국사정보원의 에이전트가 아니라면 반드시 아까 간사님이 제의한 대로 오후까지 제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 TF 이걸 갖다가 전환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 대한 명단과 세부 업무분장 현황, 사무실 전화번호를 비롯한 일체를 갖다가 자료를 다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공약사항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확인하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신성범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신성범 위원 오랜만에 이렇게 법안을 상정하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팔백몇 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중이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안심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교문위원들이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그래도 전부 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자는 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198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준은 9월 30일까지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없는 것 위주로 선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신 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정교과서 사용금지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대학총장 직선제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연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11월 20일, 또 하나는 11월 13일 해서 15일간의 숙려기간이 안타깝게도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상정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같이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유은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박주선 강은희 위원님은 다리도 편찮으시고 그런데 이따 하세요.

(웃음소리)

○유은혜 위원 앞서 김태년 간사님과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필진 명단 제출해 주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2일날 찬반의견 수렴,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찬반의견 수렴을 하는 마지막 날 찬성의견서 대부분이 그날 밤에 교육부에 접수됐다고 하고 그 찬성의견서의 내용들이 저희 야당 위원 보좌진 5명이 교육부에 가서 열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장 정도 단위로 같은 내용의 찬성의견서들이 50박스가 넘게 출력만 해서 박스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구요.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여론을 조작한 것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한 명 의견으로 처리했다라고만 하고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시기가 온 국민이 국정 교과서 찬반의견 수렴에 매우 관심이 집중되었던 때였는데 만약에 이런 의견 수렴 결과 조작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를 더 갖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의견서 서명용지를 저희가 열람 요구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하니 위원장님께 이 의견서와 서명용지를 원하는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강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하시겠어요? 강은희 위원님.

○설훈 위원 강은희 위원 하고 나면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사진행은 나한테 맡겨 주시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이따 오후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강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은희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될 때……

○위원장 박주선 우리 법안 상정을 하는 입장에서 우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의결을 거치지 못해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 차관, 문체부장관의 입장표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부 차관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거고, 이따 황우여 부총리 오시면 말씀하시기로 하고 문체부장관, 말씀 좀 하십시오. 예산 의결이 문체부의 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의결조차도 못 하는 그런 파행사태를 빚었는데, 정부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한 법안과 관련지어 이것을 쟁점화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에 선례가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체부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우선 예산안이 여야 간에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예결소위로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된 문제는 아시다시피 재정당국과의 예산 조정과정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금액들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그러한 과정이 있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이고,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나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았을 때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개관 준비와 같은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이라든지 개관 콘텐츠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졌던 점이 있고, 실제 내년서부터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까지 들었던 예산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수용했던 상황이고요.

또 소위 과정에서 다른 법안과의 조정 수용하는 조건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비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차관이 그런저런 의견 제시한 것은 공여지책으로 제시해 드린 의견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예산심의소위 김태년 위원장의 보고에 의하게 되면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예산과 관광진흥법을 연계해서 그것을 덜어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보류상태로 그대로 올린다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가 문화융성 국가를 표방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거유세 이후에 계속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평화지구를 만들겠다고 공약도 하셨고 계속해서 또 대통령으로서 언급하고 계시고, 국민의 혈세가 8000억이 더 들어간 그런 예산인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8000여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 사업이어서 앞으로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차질

없이 운영이 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체부에서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국회에서 증액 요청한 예산안 부분을 그대로 올렸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증액 요청을 했다면 문체부가 당시에 이 예산은 편성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예산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장관께서도 어렵듯이 시인했지만 관광진흥법과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진흥법 통과를 약속해 주면 이 예산은 동의를 하겠다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법률안은 별개의 의안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텐데 결부를 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특히나 내일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으로 잡혀 있는데 대통령께서 참석도 안 하신다고 그리고 또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문체부 의견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인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국은 정부에서 승인해 주고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내용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8000억 이상이 들어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 문화전당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문체부 입장에서도 좀 일관성 있는 의견과 태도를 유지를 해야지 기재부에서 문체부 의견이 무시되었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그것을 다시 배려를 하고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반대를 한다는 것은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부 내에서 또 여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기홍 위원께서 제기했던 그 문제는 우리 여야 간사들끼리 말씀을 좀 나누셔 가지고 적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제출 요구는 왜 그런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이따 교육부장관 오시면 입장을 듣고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한테 의사 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저한테요? 그러면 의사 진행발언을 나한테 하지 누구한테 한다고……

○**염동열 위원** 의사 진행발언이 사실 아니어서 질의 내용이어서……

○**위원장 박주선** 꼭 해야 됩니까?

○**염동열 위원**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예결소위를 신중하게 또 비교적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 때로는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정부 원안대로 특위에 넘어갑니까, 예결특위에?

○**위원장 박주선** 그렇지요.

○**염동열 위원**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일곱 차례에 걸쳐서 모든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 간사하고 소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지금 없고 또 이러한 상태로 그냥 예결특위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비효율적 예산소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말씀을 듣고 저는 이 법안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염동열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결소위위원장으로 부터 경과를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 오후 회의를 시작할 때 그 부분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김태년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소위원장이네.

○**김태년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김태년**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아주 심도 깊게 예산심의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보류가 되었던 예산은 소소위까지 구성을 해서 마지막 의결을 위한 합의를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예산에서 합의가 되지 못함으로써 의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예산심사는 예비심사거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본심사인데 작년도도 교육부 예산은 의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결위 본심사가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사되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증액 요구와 감액요구가 한꺼번에 첨부되고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심사되었던 여러 가지 논의과정들이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기록에 첨부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도저히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태년**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금 아문당 증액 요구는 관광진흥법하고 연계되어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야당에서 연계시킨 것이 아니고 여당에서 연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지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 부분 이런 예산들도 교육부에서 전혀 동의도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여야 간에라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는 데 의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홍준 위원** 김태년 간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예결특위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당연히 참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안으로 넘어가거든요. 정부안대로 예결특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야 간사께서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라도 이미 합의된, 물론 서로가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되어서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라는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소위에서 7차까지 위원님들이 수고하신 그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그대로 그것을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차선책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존경하는 안민석 예결특위 간사님이 계시지만 저도 예산소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전달을 못 했고 우리 소위에서 감액한 부분이든 증액한 부분이든 이런 것들은 다 전달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들은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홍준 위원** 현재 그것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배재정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문체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6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경정법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사업을 통한 적립금 중 하나인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법의 규제개혁 과제로 확정되어 있는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산지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엄격한 환경대책 하에서 만 자연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법률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성이 적어 현재까지 구성·운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소관 및 직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향교재단의 이사를 모두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였던 사람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향교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향교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였던 사람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다음은 교육부 이영 차관님 나오셔서 4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관리사가 자격종목 등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중전에는 모든 금고 이상의 형

이었으나 자격 또는 자격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수요에 따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위반행위에 대한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조건 충족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범위에 학생 본인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교육비 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을 해당 학생 및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소득·재산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를 해소하고 유치원의 공정한 원아모집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치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도에서 필요한 경우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문화재 사전 지표조사 완료 시 절차 생략을 가능케 하고 지표조사 착수신고의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매장문화재 제도를 마련

하려는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관리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비하용어를 순화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나선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노트북의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8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안전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폴더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 100건의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 제8조는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법 제2조는 ‘선행교육’을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평가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육부 매뉴얼에 의하면 선행판단 기준을 한 학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방과후학교에서는 한 학기 이내의 범위에서 심화 또는 예습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방과후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의 심화 및 예습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방과후학교 과정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반면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가능한 모순

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동법의 제정취지와도 배치되며 선행교육 근절이라는 교육부의 원칙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각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기본적인 수요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변호사 또는 수사 업무에 종사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구가 교원으로만 구성되어 수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담기구에 사건 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민·형사 절차와 다르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외부인력을 전담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담기구에 개정안처럼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 10년 이상 종사자를 포함시키기보다는 각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들 개정안은 양 대학교의 심의기구인 재경위원회·재무경영위원회에 재학생도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는 교원·직원 외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는 30명, 인천대학교는 18명의 위원으로 재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서울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을 5명 이상, 인천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측은 평의원회 등 다른 심의기구에도 재학생

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재학생의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교육부는 재경위원회에 재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참여 인원 수는 대학구성원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생각컨대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재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재경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학생의 참여를 인정할 수 있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에는 이미 재학생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국립대학 재정위원회가 법률상 학생과 직원위원의 최소 인원을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대학교법 개정안을 '직원 및 재학생이 각각 5명 이상', 인천대학교법 개정안을 '직원 및 재학생이 각각 3명 이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0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주선**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및 문화청 소관 15건의 법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화** 전문위원 이정화입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2쪽입니다.

오늘 상정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법률안 83건과 문화재청 소관 1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그 격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업무에는 정책의 총괄 조정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보다 엄격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비 지원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구단의 경영 개선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통역 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 고용되어 외국인 안내에 종사하는 무자격자에 대해서만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의 특례와 관련하여 병합 검토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소시효 기간의 특례는 문화재보호법의 부좌현 의원안과 김광진 의원안은 절취의 죄 등에 대해 각각 20년, 25년으로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김광진 의원안은 도굴 등의 죄에 대해 25년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인데, 문화재의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신설 여부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및 공소시효의 연장에 따른 가벌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법률안 외에 89건의 법률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주선** 이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는데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유재중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설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훈 위원** 5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위원장 박주선** 옛날에 보니까 5분 이내 훨씬 전에 끝내시던데?

○**설훈 위원** 잘 못 합니다, 저는.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교문위 예산안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편 예산은 성역 쪽입니까? 왜 감액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국편이 성역입니까?

또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올해도 또 안 됩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약했으면 공약한 대로 해야 되고 기재부가 왜 교육부 예산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칼질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도 못 하고 그냥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됐는데, 2년째 지금 이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의 전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정화교과서 필진이 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첩보 작전 합니까? 교과서

집필진을 당연히 국민 앞에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해야지 왜 식언하게 됩니까? 이게 무슨 국가 안보하고 관련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다 공개하고 당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집필 계획이 어떤 건지 소상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안 될 것 대충 대충 하자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하는 식으로 하자 이런 계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공개하고 당당하게 해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자세이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쉬쉬 하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설훈 위원** 올해 예산이 442억 원이었고 내년도에 521억 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뭐 이런 등등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일정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아주 잘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건데, 올해 예산도 확장된 것으로 볼 때 아주 판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추진 체계를 보니까 문체부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국고 보조를 하고 교육진흥원에서는 다시 17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각 시도에 있는 센터에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국악 운영 단체에 사업비를 재교부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국악 운영 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설훈 위원**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전국의 시

도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또 국악 운영 단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발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애긴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게 고발되면 접수할 수밖에, 접수하면 단체장들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히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예술강사 사업 운영 계획을 확장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뭐냐 하면 휴업할 때 휴업한 부분이 교사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학교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휴업수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또 근로자의 날에도 안 주고 있어요. 많은 내용은 아닌데, 결국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고발을 하게 되니까 고발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 고발 자체가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보시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내용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학 쪽에서 지금 산학협력단장이 고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체계를 잘 보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챙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살펴보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다음에 장관 바둑 두실 줄 압니까?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모릅니다.

○설훈 위원 바둑을 아셔야 이해가 갈 텐데, 바둑기사들이 기보를 남깁니다. 바둑 둔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작권법 개정을 해서 기보 내용이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바둑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보 자체가 창의성이 있느냐? 100% 창의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어진 바둑은 한 판도 똑같은 바둑이 계속된 적이 없습니

다. 각각 다 달라요. 수천, 수만, 수억 번의 바둑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바둑이 없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의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게 바둑의 결과인데, 기보가 저작권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문체부에서도 잘 지켜보시고……

바둑이 세계 인류가 만들어낸 놀이라면 놀이, 두뇌 스포츠라면 두뇌 스포츠 되는데,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작권법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바둑 기보를 보면 대부분 바둑 둔 사람이 둔 거를 그대로 갖다가 책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데 정작 돈은 책을 만든 사람이 벌고 있는 이상한 구조라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체스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도 그것이 아마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창작적 표현물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둑은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것도 창작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그 논란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설훈 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창의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이고, 분명히 창의성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데……

인터넷, 방송 쪽에서 기보를 그냥 마음대로 써요. 방송 쪽에서는 자기들 사업에 기보료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방송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내용이고, 창의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기사의 의지와 인생관 그리고 뭐 다 담겨 있어요. 창의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바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틀렸어요.

반드시 기보가 저작권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서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보를 넣어 놓으면 그쪽에서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이 바둑을 세계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이끌어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설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님 안 계시고,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부총리께서 안 오셔 가지고 차관께 여쭙 봐야겠네요.

교육부 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예.

○박홍근 위원 학교안전대책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 부총리하고는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따로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학교안전공단 설립이고 그 법적 근거를 오늘 상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으로 제가 전부개정안 형태를 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해 왔고 또 관련 기관과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었고요.

학교안전공제회와 그리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개의 공제회를 학교안전공단으로 통합하면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면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학교안전 관련 전문가도 대거 확충해서 안전 진단부터 매뉴얼 개발, 각종 안전교육에 이르기까지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전문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재원도 현재 거의 쓰고 있지 않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에다가 이 두 공제회가 갖고 있는 잉여금을 추가하면 국고 지원 없이도 공단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시설재난공제회만 양지로 끌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만 해결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구조적인 개혁,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학교안전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내실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지난 3월 한겨레정책연구소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교육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차관님 아직 모르실 텐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대해서, 이것은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응답자의 77.6%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이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은 교육 혼란 등 문제가 크므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매년 이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어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이 2009년도 교육과정을 개발했던 홍후조 고대 교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개정은 5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속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현장에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7차 교육과정까지 유지해 왔던 5년 주기 개편제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소 주기를 한 10년, 12년 하자, 가령 2개 정부 정도는 거쳐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초·중·고의 교육 주기인 12년을 다 고려해서 온전한 과정을 한, 아이들이 거쳐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정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편되지 않게끔 현행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현행법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종류만 구분을 해 놨지 발행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인정으로 할지를 장관의 고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 시행령보다 하위에 있는 장관 고시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그런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교과서에 대해서 정권이 바

떨 때마다 이런 혼란이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해 냈기 때문에 정말 과연 무엇이 상식적이고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교육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교육부에 말씀드리면 수능 작년에도 2개 오류 있어 가지고 평가원장 사퇴했고 재작년에도 수능 문제 발생해서 1년 만에 법원 판결로 나중에 오류 인정이 돼서 630여 명이 추가 입학했습니다. 올해도 난이도 실패 논란이 일었지요. 그래서 진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갖고 있는 이독점적인 위상과 구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행 수능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능시험의 시행 계획, 사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다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이의제기 절차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죽 한꺼번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홍근 위원 제가 사감위법 개정안 낸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입법 취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의 사감위에다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이것을 문체부에다가 카지노 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체부 자체의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행자부마저도 이것 반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행자부도 이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그렇게 두는 것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맞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사감위에다 좀 더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교육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것 맨날 교총에서 결정을 내려 봐야 사학 기관들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내놓은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소청심사 결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속력을, 사학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정지되지 않게끔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결정을 미이행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이나 또 이행강제금·벌칙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청위에서는 다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끝으로 지금 장관이 안 오셔 가지고, 부총리 안 오셔 가지고 지금 차관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김문기 전 상지대총장이 민사본안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 다시 총장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보고받았습니다.

○박홍근 위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상황이. 교육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총장이 총장해임청구 가지고 소송을 벌였는데 이사회에서 변호인도 안 댔어요. 이런 소송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는 그 뒷북이나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결국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이사회가 이런 과정을 다 결정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특별종합감사에서도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는 빠뜨리고 총장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해 오지 않았습니까? 파행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일한 해결책은 상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한 재감사 또는 추가감사를 해서, 지난번에 누락했던 이 이사회 파행, 임원 간의 분쟁 또 작년 감사 이후에 생겼던 학사분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벌써 5주 이상 수업을 못 했고 다 교무위원들 사퇴해 버리고 학과장도 다 사퇴하고 학교가 이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D등급 맞았고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부 계속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줘 보세요.

차관님, 답을 한번 줘 보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말씀하신 질문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방식이나 보장하는 형태 자체가 좀 다른 형태이고 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법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박홍근 위원** 아니, 차관님 제가 내용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깐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답을 들겠고, 상지대 문제 관련해서만 한번 답을 줘 보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상지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장이 즉시 항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임원승인 취소까지도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그전에도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답이 보이는데 왜 그것을 앓고 있어서 결국 아이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고스란히 이분은 다시 총장으로 복귀할 명분을 지금 만들어 냈고요. 이 교육부의 그동안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빚은 결과예요.

한석수 실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 전체가 다 5주 동안 수업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징계위기까지 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풀 거예요, 교육부가?

이 상황이나 알고 있었습니까? 이사회가 변호사도 수입 안 하고 무방비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사회와 전 총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인 것 아닙니까? 교육부, 알고 계셨어요?

○**교육부대학정책실장 한석수** 예, 제가……

○**박홍근 위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지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변호사도 하지 않고 민사에 대응하라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교육부대학정책실장 한석수** 어저께 패소했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것하고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절차 그다음에 어떻게 변론했는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답변대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거의 성의 없이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상응하는 조치가 뭐예요?

○**박홍근 위원** 이사회에 대한 추가 감사나 재감사 말고 달리 길이 없 다니니까요. 학교법인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번에도 그게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변호사도 대지 않고 법적인 소송에 대응하는 그런 이사회를 그냥 손 놓고만 계속 있으실 겁니까?

○**위원장 박주선** 박홍근 위원님, 다 마치셨어요?

○**박홍근 위원** 예.

○**위원장 박주선** 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 주셨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벌써요? 조금 더 하지요.

○**위원장 박주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합시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성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메르스대책 입법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또 승례문 부실수리에 대한 여론이 그동안 뜨거웠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재 수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강제하는 문화재수리법, 그리고 대학 박물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박물관 진흥법, 그리고 특히 임신·육아·출산·휴학제도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등, 특히 네 번째 법안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없는, 제가 소위 말하는 학생맘, 학생이면서 모성보호가 필요한 어머니들과 의논해서 만든 법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흥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특히 학생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고맙습니다.

김종덕 장관님도, 문체부 관련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없습니다.

○유기흥 위원 문화재청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수리법은 개정되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흥 위원 고맙습니다.

국립대학교 회계직원 문제에 대해서 황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법 통과로 국립대 기성회 직원에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돼서 결과적으로 기성회 직원, 현 대학 회계직원들의 근로조건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교육부는 법 통과 당시 기성회 직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학 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흥 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대학 회계직원 처우개선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기본급의 98%에서 100%로 상향하겠다’ 했고 ‘6급 근속승진 신설 또 직급체계 및 호칭 변경’, 그런데 현재 국립대는 대학 회계직원, 구 기성회 직원의 처우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단협 진행 중인 2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처우개선 거부하고 있어요, 경북대 경상대 등입니다. 이 중 경북대, 경인교대, 충북대, 한밭대는 노동위원회 조정 중인데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약속 지켜야

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협상내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부가 국회와 함께 의논했던 부분이 관철되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표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약속 지켜 주십시오. 실제로 월급이 사실상 대폭 줄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챙겨보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께서 잘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김문기 총장 개인을 해임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혹시 오늘이 항소 마지막 날인 것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내일로 듣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저는 오늘로 알고 있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유기흥 위원 한석수 실장님, 지금 항소에 대해서 대학 측에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육부대학정책실장 한석수 저희들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늘 2시에 아마 이사회를 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분위기는 항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저는 이 모든 문제에 교육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황 장관님 기억하실 거예요. 장관 되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학교 비정규직하고 상지대 얘기 제일 강하게 했습니다. ‘제발 상지대 문제로 우리 황우여 장관님 경력에 오점이 생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게 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항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항소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갖고 있는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이것 꼭 해결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집필진 공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것 공개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1월 3일 날?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 했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형식 교수 1명 빼고 아무도 공개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장관님, 명단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집필진 공개 원칙은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다만 집필이 평온한 가운데 소신껏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기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말장난인 것이요, 말장난인 것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공개를……

○유기홍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집필진에 만약에 들어가면 사회적 비판이 있고 교육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지 이것을 아예 공개를 안 하고 밑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자, 제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현대사 집필진들입니다. 1948년을 건국절로 해서 임정법통론을 사실상 부인하는 그런 담화문을 황교안 총리가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유일한 집필진으로 공개된 신형식 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과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라는 정말 황당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을 얘기했어요. 고대사 집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청와대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요’로만 좀 답해 주십시오.

교학사 집필진인 이명희 교수, 권희영 교수, 집필진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집필진은 적절한 시기에 그 방법을 검토해서 공개하겠다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유기홍 위원 장관님, 약속 지키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교육부는……

○유기홍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책 아시지요? 이 책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2004년 ‘한국 근·현대사’, 이게 소위 말하는 대안 교과서입니다.

이게 5·16을 찬양하고 친일을 미화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축하했던 바로 그 대안 교과서인데, 지금 현대사 분야는 인접 학문 학자들도 필자로 했다고 하는데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이 세 분 집필진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집필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요.

지금대로라면 집필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책 낼 때 책 뒷면에다 이름 쓰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다섯 명뿐만이 아니라 정말 48년 건국절 문제를 포함해서 반헌법적인 발상을 할 그런 집필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황우여 장관님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갑의 박혜자입니다.

문체부장관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나오게 된,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7월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를 삭제했어요. 그 대신에 제13조 문화

콘텐츠산업실장의 업무 속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전문위원의 행정입법 검토를 보게 되면 “실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음에도 해당 시행령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반적인 정부의 조직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대통령령 개정이 말하자면 보편적인 법체계의 상례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이었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박혜자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행정입법이 통상적인 법체계의 상례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 그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에도 19조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장이 행자부장관과 협의해 가지고 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재정 여건상……

○박혜자 위원 원래 법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란을 법에 두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시행령에 있었던 것도 삭제하고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만든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및 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박혜자 위원 그것이 법에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법에 그 직제를 규정하고 있고 기존에 시행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이 대통

령령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통상적으로.

자, 또 추진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인데요. 대통령 소속하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장관께서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박혜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단장의 직급을 과장급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통례에 벗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급보다 고위공무원 이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현재 전담 장은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해당되는 전문임기제가 급으로다가 저희가 하는 거고……

○박혜자 위원 전담 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성위원회는 추진단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추진단장과 관련된 문제는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력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 가 가지고 다시 협의하기로다가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박혜자 위원 그래서 추진단장의 직급은 분명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위공무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것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박혜자 위원 직급 조정하세요.

그리고 또 추진단이 실제 조성위원회 업무를 지원해야 되는데, 특정 실·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업무인데 이 추진단을 콘텐츠산업실장의 업무 분장 하나로 묶어 두는 것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박혜자 위원 그래서 추진단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리시고 실제 독립시켜서 조성위

원회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실제 2006년에 법을 만들 때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논의의 과정을 보면 실제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추진단의 업무는 작은 조직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행령에 맡겨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조직체계를 꾸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법을 만들 당시에요.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현행 법률체계가 구성된 것이다, 그 점을 장관께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화콘텐츠산업실의 소속으로다가 변경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문체부의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가장 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문화콘텐츠산업실입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혜자 위원 국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실제로 이것은 여야를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면밀하게 보시고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부는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장관께서 직급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논의해서 직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더 못 줍니까?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박혜자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어서 제가 다 질의를 못 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지금 상당히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올렸던 문체부 예산의 50%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증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저의를 대단히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실제 요구한 액수의 50%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이 족하다니요? 증액이 필요 없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 신청을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문체부가 일을 그렇게 합니까? 장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 예결위에서도 최종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입장을, 원래 기재부에 요구했던 정부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반은 아니고요. 343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각 부처가 요청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아시다시피……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각 부처가, 기재부는 물론 깎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증액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데 재정당국하고……

○박혜자 위원 문체부가 통상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문체부에서 원래 필요해서 요구했던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증액해 주겠다고 해도 지금 문체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산조정 과정에서 감액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갖다가 저희 문체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박혜자 위원 실제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게 되면요, 경상적인 성격의 운영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콘텐츠 개발비나 예산 자체가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경상비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편성된 액수를 들어가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 836억 원……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러면 문체부장관, 자꾸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발언에서 그랬잖아요. '연간 800억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관은 거부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실제……

○박혜자 위원 대통령께서도 '연간 80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왜 장관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실제 저희가……

○박혜자 위원 나는 부처 예산을 주겠다 해도 부처에서 예산을 받지 않겠다라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부처에서 신청을 했던 예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그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제정법입니다, 장관님.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작년에 좀 문제가 됐고 올해에도 계속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학교시설에 있어서 시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민법상 설립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경우에는 대학은 또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가 나면 사고 위주로, 배상 위주로 편성된 이 공제회 기능을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금 1948년에 설립이 되어서 자산도 많이 증가가 되고 했는데 국회의 감독 기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시설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좀 확대하면서 그리고 대학시설이 빠져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같이 배상과 보상이 가능하며 그리고 건물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새로 제정된 제정법입니다.

아마 교육부도 이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박홍근 의원께서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전부개정안을

내셔서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합쳐서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법률안이 같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큰 시각에서 보면 이 법률안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성격상 그리고 현재 각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가 전체 17개 시도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선 시기적으로 시급한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먼저 제정하고 시도별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합하고 추후로 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강은희 의원님 법률안의 취지에 교육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우리 부와 또 관련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이 법이 좀 시기적으로 조금 많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급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예전에 김기현 의원님께서 한복 진흥법안이 있고 제가 최근 9월 초에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두 법안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미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한복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한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 너무 고유한 의복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강하고 그 상징성과 더불어 또 입기에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생활화된 한복이 잘 입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복을 짓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지을 수 있는, 전통 계승 가능한 기능인 양성도 좀 시급하게 필요하고 대부분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복산업 자체도 영세성이 있고, 그런데 또 세계적으로 가치는 좀 한류와 함께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한복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양성을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은희 위원** 아울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스포츠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에이전트나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반 검토를 해서 이번에 법적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스포츠산업의 R&D뿐만 아니라 실제 스포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는 데 장관님께서 각별히 많은 성의를, 그리고 많은 검토를 해서 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배재정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상정이 되지 않은 총장직선제를 대학평가와 재정사업 등과 연계한 것을 금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발의했는데요,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를 정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김태년 간사가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이 못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께서 법률안을 내셨습니까라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도 공무원연금을 개편할 때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모르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하면서 정부가 계속 했던 얘기가 뭐 사학연금은 손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를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사학연금법 개정은 거기서 쪽 빼고 마치 개정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지금 결국 뭐 준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지요. 이런 식으로 또 좀 슬쩍 넘어가는 식의 이런 법률안 처리가 저는 상당히 우리 정부의 행태 그리고 당시에 정부의 입장을 거들어 주셨던 우리 여당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률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지만 황우여 부총리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소위에서 저도 논의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누리과정 관련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결특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만큼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국가사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요.

제가 낸 법률안 중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와 교육청이 같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지금 그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이 평균 미전입 비율이 26.6%이고 금액으로는 1조 3650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라도 제대로 교육청에 주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계속 누차 강조하시는 게 지방교육청이 뭐 세수 세출을 잘 관리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작 지자체에서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만 해소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어려움을,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니다만 지방교육청이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

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합의를 해서 2021년까지 미상환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안에는 제가 3년간 분납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안을 실제로 논의할 때. 이 부분이라도 제대로 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역 교육청들을 돕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교육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법과 연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좀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당국과 또 교육부가 별도의 의견을 소위에서 내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 좋은 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께서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냈는데 여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낮추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상대 당 의원님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시설 확보라는 공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문체부장관님, 사실 취재원 보호법안이라든지 제가 뭐 특히 언론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법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어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취재원보호법이라는 게 우리 언론인이나 기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내부적인 잘못이 있거나 부패가 있을 때는 그것을 고발하는 분들이 언론에 그 고발을 할 경우에 ‘내 신분이 보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드리기 위한 법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처에서도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좀 하고 싶습

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게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어떤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서 일반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또 언론 신뢰도에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선진국의 입법례들을 보시면 그게 결코 그렇게 과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부위원 가운데…… 아, 김종 차관 오셨네요, 의원님을 면담하고 오셨고, 교육부의 이영 차관은 광주에서 열리는 자유학기제 세미나에 참석하러 나가셨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보근 콘텐츠국장님은 우리 유인태 의원실 세미나에 참석함을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님께서 특별히 오셨는데 많이 듣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일단 교육부장관님, 국정교과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고, 마음고생에 일단 좀 위로를 먼저 하고요. 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서로가 할 이야기는 많겠지만요.

아마 이게 어찌면 제대로 토론하는 19대 마지막 상임위라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죽 전체를 훑어보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우여 장관님께서 그래도 수영안전교육의 징검다리를 놓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출신의 우리 부총리·장관님답게, 지금 놓아 주신 징검다리는 앞으로 큰 다리가 되어서 우리도 선진국 아이들처럼, 수영안전교육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고……장관님께서 그런 징검다리를 잘 놓아 주시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수영장 건립하는 예산이 있어서 저는 이 예산에 그렇게 동의를 찍지 못하겠어요. 지금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새로 짓자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후에 막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예산도 없는데 이게 또 큰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수영장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수영장들을 활용을 잘하면 지금 얼추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의견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의 수영수업을 확대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니까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안도 장관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고, 사실 뭐 제가 발의를 했지만 장관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이 부분은 제가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장관님이 수일 내로,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법 통과에 함께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민석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전히 학교와 지역사회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는 학교 인프라 가지고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자체하고 벽, 이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무는 초보적인 일들을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국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에 좀 격려하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한번 줘 보시지요.

그리고 한 지자체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 지자체 내의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지자체 간에 엮어서 교육청하고 이 자유

학기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오산·화성 세 지자체가 모여서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공동의 협약을 시장님들이 맺었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말씀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시장님들한테 ‘잘했다’고 전화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민석 위원 그런 식으로 전국에 거점을 만들어서 지자체 간에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모델을 확산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가 자유학기제 중학교에 가지고 강연을 한다, 프로그램을 한다…… 이게 대학에서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안민석 위원 프로그램이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인성교육 분야로 해서……

○안민석 위원 아니, 안 돼요. 대학에서 고등학교 지원은 입시 전형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 중학교요?

○안민석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원하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대학하고 지역에 있는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하고 원활하게 연계가 될 테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

○안민석 위원 그걸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부장관님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1년 동안에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큰 물꼬가 터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개혁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혁의 주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 문제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기관이나 사람들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나 아니면 주변 언저리로 밀려가 있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좀 새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성원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황우여 장관님, 뭐 하실 말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수영 부분은 사실 교육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열의를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교육부도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은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수영장 설립이 아주 긴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 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할 때 잘 살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관심도, 저희는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이 주도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적극 같은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공감을 하면서, 특히 지자체 간의 연계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격려 방안을 만들까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성 교육 분야와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한 시안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대학 교수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교육부장관, 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법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재 학교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그 고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제도를 지역의 유무나 소득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 그 교육 관련 기관이 보면 ‘기존의 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축소를 한 것은 법 적용했을 때 어떤 실효성 때문에 좀 명확하게 구체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가 있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각종 학교에 해당되는 외국인학교하고 대안학교 어떻게 하실..... 이게 지금 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외국인학교들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안학교도 원래 그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귀족학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 학교가 선행학습 특화 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는 그 자체로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가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교육부가 유탈한 것이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특히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이게 입시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8월

달에 언론 몇 군데서 나왔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하겠습니
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는 단위가 한 학기 되
다 보니까 선행학습을 한 학기 단위로 보지 않습
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
를 완화했을 때 이 기한을 좀 명시하는 게 안 맞
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적절한 기한을 뒤서, 아니
면 이게 학교에 따라서 무한정 늘어날 소지도 배
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은 경우
는 아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봐
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법이 작년 9월
에 통과됐지만 지금 서울의 일부 학원가에서는
선행학습 상품들이 버젓이 광고가 되고 있는 것
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자유
권의 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어떤 제한하는 데 한계가 따르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부장관님께, 지방재정법 개정
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단체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에 대해서 경상비 보조가 힘들어졌
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진흥법 39조
를 어찌 보면 좀 확대 해석했다고 할까요? 좀 유
연하게 해석을 해서 올해 이렇게 넘겼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통과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
겠습니다마는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관업
무를 하는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고충을 보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업무
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필수 보직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
까? 이것을 지켜야 될 부서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이 법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관
께서 좀 세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저희도 다 동감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조례 제정하는 기간 때
문에 경과규정을 좀 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
희 의견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진위 부산
신사옥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흥릉 사옥을
165억에 매각해서 설게비로 20억을 쓰고 그다음
에 토지매입비로 69억 사용하고 60억은 지금 영
화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용교 위원 이 기금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사학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은 계속 이 기금들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기금을? 연기금 활용
한 거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위원회가 나
주로 이전하면서 기금을 활용했지요.

그리고 2004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원칙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도 보니까 올해 편성이 되어 있
던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었습
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
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입장을 명확
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입장은, 전
에도 위원님께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영진위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건 좀 빨리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돌아
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문제와 관련돼 갖고 기재부 쪽에 기금을 우
선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자꾸만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원칙의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
다만, 최근까지도 아마 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께서 아마 이것
과 관련돼 갖고 이미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기존의 남양주촬영소에 대한 매각이
없다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아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재부하고 논의는 계속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게 기재부 자체 지침에도, 기재부 스스로 2004년도 발표한 그 지침에도 어긋나고, 기존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생각에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미루어지는 게 영화산업을 위해서 정말 안 좋은 일이라서 저희도 하여튼 기재부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우선 발전기금 갖고서 그것을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하는 것을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황우여 부총리님, 우선 오늘 예산 관계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교육예산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예산심의가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늦게 시작은 했지만 저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여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예산 심의를 소위 차원에서 마쳤는데, 결국은 막판에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지 못했어요. 먼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리과정 문제로 지금 일선 교육현장이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진통 끝에 목적예비비를 막판에 약 5000여억 원 이상 편성을 해서 그렇게 긴급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땀질식 처방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이 문제가 또 재발을 했는데 이와 관계해서 어떻게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방에 대한, 해법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특히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지금 아주 불안해 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어린이집 학부모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혼란,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똑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는 정부당국과 일선 교육청 간에 이 문제를 pingpong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런 지난 과정은 아시는 거니까 굳이 누누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적극적인 해결 대안들을 갖고서 이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결국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텐데, 황우여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의견과 또 어떤 해결의 대안들을 재정당국과 좀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럴 용의는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안 관계해서 일단 교육부 관계 예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낸 법안 중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있었고, 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학원들이 운영의 부정으로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진폐원 한 다음에 학원 명이나 설립 운영자 명을 바꿔서 다시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일종의 학원 운영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 처분효과가 일정기간 동안 학원에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3자가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정처분이 있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단서도 좀 필요하겠다는 해서, 그 부분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한 일종의 개정 방향으로 나중에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동감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기본 목표와 철학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관계해서 보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보면 역시 이러한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례가 경계선 지능 학생인데요. 이 문제도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도 가졌고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통 한 학급에 약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 학생들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지적장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만 교육과 훈련을 초기부터 적절하게 받으면 상위 학습이 가능한 이런 학생군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데서 이를 지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를 수용해서 중재안을 다시 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등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같이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근본적으로 이 법의 중요성과 그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또 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정 부분을 교육부가 또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제출해 주신 것과 함께 소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꼭 이 취지 살리는 법이 통과되도록 교육부도 같이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해서도 하나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요. 같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종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공단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입니다,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안홍준 위원** 경륜·경정법 제4조에 보면 “경륜이나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단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만 시행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창원경륜공단과 부산 스포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법에 따라서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으면 경주사업자가 되고 이들에 대한 경주장 설치·입장료·승자투표권의 발매환급금에 대한 법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행 경륜·경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승자투표권의 권리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환급금과 구매금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만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주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금과 미사용금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만 귀속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위험부담과 과실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못한 법이 있다면 입법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미환급금과 미사용금액은 최근 5년간 3만 5000건, 액수로는 10억 3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연평균 2억 4000만 원의 지방재정 수입액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9조의2에서 그 구매권에 관한 규정 신설과 함께 제14조의 소멸시효 규정을 개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창원경륜공단과 부산 스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점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주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지방재정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주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이면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다음, 또 김종덕 장관님……

제가 부총리님하고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를 안 하더라도……

(웃음)

개정안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e스포츠자문위원회의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e스포츠자문위원회의가 열린 적이……

○안홍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자체가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구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홍준 위원 이처럼 자문위원회의가 구성도 되지 않고 그 실효성도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어떤 자문위원회의의 활동이나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와 달리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기구의 경우에는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e스포츠시장의 규모는 약 6600억 원, 한국·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약 413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폐지는 자칫 대외적으로 정부가 e스포츠산업에 대

한 의지를 후퇴시킨다는 시그널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e스포츠산업에 대한 입지가 좁아지고 투자 감소로 인해 산업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아마 구성도 안 됐으니까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안홍준 위원 당장 e스포츠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조정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관련 유관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도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소속으로 15개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폐지보다는 이들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실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e스포츠진흥위원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 안에 자문기구를 두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정진후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김종덕 장관님, 지난번 상임위원 때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지역신문 지원하는 것,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소위를 하면서 대충 매칭을 맞췄습니다. 기금에서 한 40%, 한 40억 출연하고 정부에서 한 60억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방송특별법은 작년 6월 달에 이게 돼서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는데, 이번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지역신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병찬법에 있어서 그래도 신속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은퇴체육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2729명을 여론조사했는데 그중에서 1009명 정도가 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20명을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최저생계비가,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이 2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50% 내지 130만 원도 안 되는 선수들이 612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4인에서 130만 원도 못 버는 가족들이 612명이 되는 거예요, 2729명 중에서.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강조를 해 드렸고 또 우선 장관님께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선 급한 대로 잘 정리해 나가는데, 이 법도 김병찬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52만 5000원을 김병찬이가 연금으로 받는데, 62만 7000이 최저생계비인데 3만 원 모자라서 49만 9288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배로 올리자,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돼야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법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이 법을 냈다니까 저한테 많은 선수 출신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꼭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해서 제가 상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장관님 안 계실 때 전경련의 박상구 회장이 관광위원장이시더라고요, 전경련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올림픽로드관광위원회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국회에서 일본진흥협회하고 한국하고 올림픽을 어떻게 더 교류할 것이냐, 관광협회에 대한 진흥을 할 것이냐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학생들 30명을 초청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관광청을 요구하셨어요, 박상구 회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법 제정을 통해서 관광청이 안 되면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실

질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효과가, 한중일이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게 아마 정부기구로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박상구 위원장님께 한중일 관광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염동열 위원 어쨌든 국회 쪽에서는 제가 교류를 해서 한번 일본 팀들하고 전화통화도 했습시다마는, 중국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가 의제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일본은 이미 2020년을 가지고 자동차라든가 또 다시 한 번 일본 음식에 대한 세계화 이것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할 수도 있고, 법이 필요한 것은 법제도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정진후 위원 교육부장관님, 상지대 문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문기 전 이사장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이것은 사실상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서 발생한 문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소송 과정, 패소로 돼서 지금 항소, 금방 항소를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현재 거기는 내일이 아마 항소 마감일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지금 항소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 2시에 항소했다네요.

○정진후 위원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래서 1심에서 뺐니까, 재판의 진행 과정을 교육부에서 살펴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실 사립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일이 과정 자체에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정진후 위원** 그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것은 그 당시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에 대한 판단을 좀 교육부에서 하시라는 주문을 교문위에서도 계속 했고 그리고 해임처분 하나만으로 끝났을 때 법률적 후속조치를 취해서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충실히 살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징계 과정을 이렇게 뽑아서 나온 것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률대리인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진후 위원** 그리고 의견서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어요. 무변론 승소판결이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패소를 걱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패소를 아예 걱정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해서 보조참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이미 그 결과가 교육부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가. 그래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법원의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대화 교수나 방정균 교수 같은 경우를 해임시켜 놓고 해임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수천만 원씩 학교 측에서 썼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법률대리인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패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이 과정이 다시 되풀이된다면 저는 그 책임이 교육부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사들의 임무가 해태된 점이 없는지를 포함해서, 또 지금 보조참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판

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관련해서, 제가 공무원연금법개정특위에서 지난 시기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공무원연금특위 과정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반드시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 책임자가 와서 함께 회의에 참관하도록까지 제가 요청을 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이것은 정부 개정안으로 나오지 않고 여당 의원님에 의해서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제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들이 몇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원이 아닌 직원들에 있어서 고용보험의 문제 그리고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의 지원과,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계속 장려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같은 문제는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논의하실 때 정부도 반드시 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법과의 차별성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산재를 받을 때 이미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산재가 판명된 경우와 같은 유사한 경우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서 산재를 신청하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인정되는 경우도 극히 적습니다.

이런 차별성은 해소를 해 주셔야지 연금대상자들이나 가입대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지금 개정안도 법률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국립대병원 직원들, 또 국립대병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대학병원 직원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지적까지를 감안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법과 그다음에 고용 문제는 반드시 이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논의에서 같이 추가되어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법안심사 전에 미리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유은혜입니다.

방금 정진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상시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2014년도부터 저희가 국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상지대의 2011년부터 이어 왔던 이사회와 파행이나 임원 간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총장 해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 요구가 판결나는 데, 재판하는 데 한 7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길게 끌어 왔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속전속결로 판결이 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사회 문제, 임원 분쟁 문제, 이런 것 해결하지 않고서 상시대 문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다 일괄해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지금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또 절차를, 과정을 봐야 하겠습니까만 지난 국감에서도 김문기 총장님이 아주 중병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보니까 감사 당일 날 저녁에 말씀하게 인사복 차려 입고 병원 들어가는 것 보셨잖아요. 그때 국감장에 나와 있었던 아들은 위급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증언을 했고요, 이렇게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모르시는 바 아닐 텐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돼도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본질을 피해가는 그런 식의 감사, 실제로 감사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 것은 피해가는 듯한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상시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오전에 장관님이 출석을 못 하셔서 제가 위원

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국정화 예고기간 끝나던 11월 2일 날 밤에 무더기로 교육부에 찬성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그것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유은혜 위원 직접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저희 야당 의원 보좌진들 5명이 내려가서 열람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됐는데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장관님께서도 어떤 문제가 지적됐는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의견서의 숫자도 좀 믿을 수 없거니와 찬성 의견서가 9장이나 10장 단위로 묶여서 그렇게 깨끗하게 출력해서 박스에 놓여져 있거나 또 같은 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9장, 10장 단위로 출력해서 제출됐거나 또 개인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 가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이 열람을 요청드렸는데 여야 합의해서 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많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혹을 해소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찬성이든 반대가든 국민들이 접수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런 의혹을 씻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적으로 진상과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여야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가서 열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상임위의 합의사항으로 마치 열람을 거부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원들이 가서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부에도 자체적으로 이런 의혹을 씻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선 상시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적하거나 또 징계절차를 밟거나 절차를 밟

는 데 적절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률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혹시 해태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또 지금 항소를 했다가 소송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항소과정에서도 이 1심 재판 때처럼 이렇게 변론에 대해서나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혀 신경 안 쓰실 겁니까? 그냥 이렇게 해태하고 계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동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사립학교의 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항소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땠는지를 좀 파악해 보고, 거기에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가 없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은혜 위원 필요하면 이사회에 대한 재감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선 좀 교육부에서……

○유은혜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파악을 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마지막 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11시경에 교육부로 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새누리당 측에서 역사특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 다섯 상자가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전달됐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11월 2일 날 2시경에 세종청사에 반대 의견서 26상자를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 의견서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늦게 11월 2일 날 9시 30분경에 교육부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23시경에 50여 상자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은혜 위원 장관님, 혹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여의도의 한 기획사 인쇄소에서 무더기로 출력해서 거기서 트럭까지 다 준비해 왔다가 교육

부로 접수했다는 언론보도도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부는 검토를 했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찬성 의견 15만 2805명 제출 인원 중에 2989명이 익명이거나 이름은 있는데 주소가 또 전화번호가 불명확한 경우는 다 가려서 그것을 숫자에 넣지 않기로 했고, 반대 의견 32만 1075명 중에도 13만 5221명이 익명이거나 이름은 있는데 주소나 전화번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의견으로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해서 나머지 부분만 의견으로 해서 그 의사를 종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는 그 당시에 의견을 내는 항목이 있잖아요. 어떤 사유로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지 이 부분이 교육부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려서, 그러면 대개 유형이 한 십여 가지씩 이렇게 나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 숫자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견으로서의 성립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으로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의견을 검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은혜 위원 지난번에 차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렇게 중복되는 의견서를 하나로 카운트했다,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전달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기된 바와 같이 50박스의 무더기 조작 의혹이 있는 이 의견서가 그렇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장관님께서 항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고 저희가 저희 당만이 아니라 밖에서 네트워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찬반 의견서의 숫자 자체도 사실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숫자를 그렇게 카운트했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무더기로, 어디선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혹도,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확

인하고 의혹을 씻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가 열람을 요구했는데 ‘야당 위원들 열람도 여야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회의원이 국가기밀 사항도, 국정원 자료도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낄 때는 마치 뭔가를 숨기고 거부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오해 없도록 필요한 위원들에게는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게 해소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그 의혹의 대상이 익명이거나 또는 주소·전화번호가 불명확,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는 찬성 15만 2805명 중에 2989명을 가렸고, 반대도 그런 게 꽤 많아 가지고 32만 1075명인데 이름은 있는데 주소·전화번호가 없거나 익명인 경우 13만 5221명을 가려서 그것은 정식의견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숫자의 의견서의 내용을 분류해서 십여 가지씩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론조사 내용이거나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내서 교육부에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공개할 때는 우리 국회법에 따른 절차로 해 주시면 따르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또 그 의견 낸 분들의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법안들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안인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끝났습니다.

○도종환 위원 응모한 56명 중에 17명을 선정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그러면 30명을 초빙한 게 되네요, 그렇지요? 초빙한 집필진 수는 30명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본래는 몇 명을 초빙한다고 그러셨지요? 처음에 초빙하려고 했던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25명을 초빙하려고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래요? 10명 아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25명으로 지금……

○도종환 위원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은 몇 명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이 21명입니다.

○도종환 위원 21명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시대별 집필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지금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종환 위원 고대사는 몇 명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편을 통해서요.

○도종환 위원 고려사는 몇 명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도종환 위원 조선사도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모릅니다.

○도종환 위원 근대사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근대사가 될 텐데, 근대사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독립운동사가 들어가 있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현대사도 모르시겠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걸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시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와 있는 통계는 큰 줄거리만 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현대사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 정치·경제·헌법 등 인접 학문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발표하셨던데 그중에

정치·경제·헌법학자의 숫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필요하신 범위 내에서 제가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혹시 지난번에 보니까 군사학자, 군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군인들도 참여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국사편찬위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의하면 군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군사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군사라는 게 아마 군의 역사, 전사를 전공한 분이……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군사학자는 참여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저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참여 안 했답니까?

○도종환 위원 참여 안 했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사편찬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균형 있는 교과서 만드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진보적인 학자도 여기 참여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균형 있게 서술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중도적인 학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수적인 학자로만 돼 있는지 진보적인 학자도 참여했는지 정도는 보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것에 저희는 관심 표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 있는……

○도종환 위원 알고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집필진에 대해서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범위 내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종환 위원 초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건 국사편찬위

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님도 이렇게 전혀 모르시면 이게 투명하게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통해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투명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 적절한 시기에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가장 국사편찬위원회로서는 심려가, ‘이게 과연 자유롭게 평온한 분위기에서 저술할 수 있을까’, 보장을 하고……

○도종환 위원 이들은 왜 집필진에 참여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신상 털기도 하고요. SNS에서 하고……

○도종환 위원 누가 신상을 털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누가, 신상을 털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표 집필자 중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신상이 털려서 포기한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휴, 지금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종환 위원 아니, 본인이 아침부터 술 드시고 그러다가 발언 실수하시고 그래서 포기한 거지 누가 신상을 털어서 포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여러 개 뭐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집필진의 주변에 관한 일은 교육부장관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많은 그러한, 자유롭게 평온한 분위기에서 집필하게 해 달라, 보장해 달라……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평온한 분위기에서 토론해 가면서, 쟁점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집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집필이 완성 되면……

○도종환 위원 그러려면 공개해야 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개적으로 행정을 진행하지 않고 밀실행정이라는 소리, 밀실 교과서라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도 초등학교도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동안도 걱정……

○도종환 위원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지금까지 집필진 명단 공개했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책을…… 검인정도 다 완성된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국정교과서를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5, 6년 전에 이미 쪽 해 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례에 따라서 하고, 또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 완성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겠고, 국민들에게 다 투명하게 확정되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것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만 보아도 탈법 불법 편법 비상식 밀실 감감이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한 가지 더 여쭙 볼게요.

여기에 앉아 계셔서 죄송하지만 강은희 위원님이 언론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특정한 어떤 단위, 이런 단위가 한두 분에 의해서 저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여섯 명, 최소 10명 정도라도 논의를 해서 교과서를 단위별로, 특정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야 안심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단위당, 고등학교 한국사 예를 들어서 단위당 평균 집필위원이 몇 명입니까?

단위는 몇 단위인지는 아시지요,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몇 단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6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7단위인데요.

그런데 그 단위당 그러면 평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글썽요, 그러한 것은 국사편찬위원장께……

○도종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21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위당 3명이 되잖아요, 금방 계산해

보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국사편찬위원장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1명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쓴다 그랬으니까 단위당 3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계속 한 달 내내 언론에 나가서 말씀하셨던 강은희 위원 말씀처럼 최소 10명 정도, 한 단위당 10명, 적게는 6명까지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이 말들은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정부에서는 35~36명 정도라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정한 집필진 범위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단위당 적절한 배정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검인정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도종환 위원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영상으로 방영될 때 보면 국민들이 ‘아, 정말 모두가 알고 있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 교과서가, 정말 질 높은 교과서, 균형 잡힌 교과서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신뢰가 들까요,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은 발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그걸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국사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필요하시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김태년 위원 ‘교육부는 아무 지침도 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특별한 지침은 거기는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특별한 지침 내린 바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11월 3일 날 장관께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필부터 발행

까지 국정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집필부터 발행까지입니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집필이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집필에 들어가고……

○김태년 위원 집필진도 공개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산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교과서 개발부터 집필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나 집필진이나 어느 단원에 어떤 학자들이, 무엇을 전공한 학자들이 이 교과서를 쓸 것이라는 것을 공개 못 하는데 무슨 투명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필진들이 평온한 가운데 소신껏 집필할 수 있도록 그 시기와 방법을……

○김태년 위원 자신 있고 떳떳하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면 그것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적절할 때 공개할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공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비비를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

○김태년 위원 그 예비비를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과연 정당하게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김태년 위원 저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비비 이렇게 편성한 적 있느냐?', 감사해서 바로 잘린답니다, 감사당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고교 무상교육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번에 교육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교육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교육부는, 교육부는 말이지요. 어떤 것은 국편에 갖다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경우는 국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나요? 우리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발표하셨어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누가 발표를 했습니까?

○김태년 위원 교육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언제요?

○김태년 위원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 있지 않아요?

○정진후 위원 당정 협의의 결과예요.

○김태년 위원 당정 협의 결과인가요?

그때 당정 협의를 하고 나서 뭐라고 발표를 하셨나요, 그것도 대국민 약속인데?

'2017년도까지 고교 무상교육 완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건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선거 때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면 내년도가 2016년도, 내후년이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한 해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2조 원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못 하면 못 하겠다 이유를, 국민들께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켰으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에 대해

서.....

○**김태년 위원** 그게 진실한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대답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박근혜정부 내에 무상교육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정 문제로 시기가 조절될 수 있고 임기 내에는 착수하겠다’, 이게 총리.....

○**김태년 위원** 그게 총리가 언제 답변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먼저 부분은 15년 2월 이완구 총리가 국회에 답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15년 10월 이번에.....

○**김태년 위원** 당정 협의 때, 당정 협의하고 나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아마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임기 내에는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김태년 위원** 원래 ‘2017년도까지 완성하겠다’가 공약이었다니까요. 착수하겠다고 아니에요.

지금 장관께서 여당의 대표를 하실 때 치렀던 그 선거에서 지금의 대통령께서 했던 대국민 공약이 ‘2017년도까지 무상교육은 완성하겠다’였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의 입장은 일단 사업 착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착수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대국민 약속, 공약은 지킬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만 재정구조상.....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지킬 수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대답 좀 하게 하십시오. 대답 좀.....

○**김태년 위원** 고교 무상교육 2017년도까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2017년까지 지키기로, 2017년이 아니라 임기 내에 지키기로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년 위원**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2018년 2월까지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그렇잖아요. 2018년 2월이면 2017년도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단 사업 착수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김태년 위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2017년도까지 고교 무상교육 완성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집니까, 못 지켜집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재정 형편에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재정 형편이 안 돼서 못 지킨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답변을.....

○**김태년 위원** 내년도에는 아예 착수도 못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해야 되는 건데, 필요 소요예산이 2조쯤 됩니다. 그 2조를 2017년도에 한꺼번에 편성하시겠느냐 이 질문을 드렸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아직 국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착수하는 데 총력을.....

○**김태년 위원** 교육부가 우리가 예산소위 하는데, 우리 교문위 예산소위 하는데 교육부가 최소한 어려우면 이천몇백억, 이천억여 원 국회에서 증액 요구했는데, 야당에서 증액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부동의했어요. 그런데 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소관 부처로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것을 교육부가 동의를 하고 예결위로 넘겨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올해 착수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본인들이 했던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

서…… 지키지 못하면 왜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국민들께 상세히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진실한 자세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기재부가 재정 형편을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본 장관도 안타깝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기재부나 교육부나 청와대나 이런 차원도 있지만 현 정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같이 우선 일단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끝났는데요, 아마도 정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하시는 게 낫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씩……

○배재정 위원 그냥 5분 합시다, 몇 명 없는데.

○설훈 위원 5분 해요, 5분. 아까도 5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정진후 위원 첫 번째 질의도 5분 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하니까 5분 하세요.

○설훈 위원 그러면 다음 10분도 할 거야. 다시 또 돌아갈 거야.

○위원장대리 신성범 5분으로 하고 그러면 1분 더 주는 것 없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와 동일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우선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총리를 좋아합니다. 이견 뭐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것 아니라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데, 아마 부총리께서 정치를 한 이래로 지금처럼 곤혹스러워 본 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과서 그다음에 방금 김태년 위원이 질의했던 고교 무상교육 문제, 누리과정 문제, 기타 등등 수도 없이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작금의 현상은, 본 위원이 보건대 부총리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 하고 할 수 없이 하

는 답변, 이게 여실히 읽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라면, 본 위원이라면 금방 그만두고 나온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구조상 그것도 안 되는 처지니까 참 이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필진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편에 다 맡겼다……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국편을 지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국편이 어떻게 가든 간에 장관께서 부총리로서 그 상황을 지휘하고 국편이 아직도 얘기를 안 하면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공개하고 하자’ 이렇게 하셔야 적어도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분들의 의지라든지 국민 앞에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자세일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국정교과서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신감 없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밖에 안 읽혀져요. 그게 제가 볼 때 진실에 가까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가 제대로 되는 교과서냐, 도대체 생산돼 나오기는 할 것이냐, 본 위원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생산 안 된다고 봅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극소수,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이유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안 된다는 것 상식입니다. 3, 7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다음에는 내년쯤 되면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가시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충돌이 일어날 텐데 현재의 권력은 점점 힘을 잃어 가게 됩니다. 미래의 권력이 국민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국정교과서 안 한다 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왜? 그분도 대통령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어야 되니까.

그거 다 읽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이거 제대로 신명 내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

요. 구조는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힘없이 그리고 처음부터 시종 일관 자신감 없는 그리고 사실과 다른 동떨어진 얘기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지금 국정교과서의 현재 상황입니다. 결과는 뻔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게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 그런 이야기 비슷한 상황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국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장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개인 위원의 생각이지만. 이걸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관을 좋아합니다. 부총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쯤 결단을 내려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참 좋아하는 개인이 개인께 드리는 충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문체부장관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화가 천경자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성으로서 한국 화단의 새로운 화풍을 일으키고 우리 문화사의, 적어도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그랬던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그게 판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인도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설훈 위원 그러면 그걸 오픈해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작인지 검증은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인이 돌아가신 마당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위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판정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시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본인이 위작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가 진짜인지, 위작이면 위작이라고 나올 건지 아니면 실제 그게 본인이 그런 게 확실한지 이걸 지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두고두고 이게 그냥 미스터리 비슷하게 남아갈 거라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오픈해 가지고 판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공개를 해야 한다, 지금 창고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보게 하고 위작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천경자 화백이 한국미술사에 끼친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천 화백이 금관문화훈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금관문화훈장 수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이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모 결과 외국인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 문제는 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교육부장관도 상지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상지대 관계자들이 너무나 국민을 우롱하고 교육부를 능멸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걸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너무 창피해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상지대 문제를 정리를 좀 하십시오. 곧 부총리를 그만두고 정계로 다시 돌아오실 걸로 보여지는데 부총리 그만두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문체부장관부터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부총리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경자 선생의 ‘미인도’ 위작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술계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 중의 한 가지가 되고 하니 현재의 미술품감정 위원회가 과연 그걸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술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논의는 진행되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관문화훈장 수여와 관련된 것은 내년에 문화훈장 수여 시 저희가 미술계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인사 조회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스페인에서 이번 주 중으로 보내겠다 그랬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중에 만약에 이게 회신이 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세 분에 대한 인사 조회 결과를 놓고서 검토를 한 후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교육부장관에게는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하나는 교과서 문제고 하나는 상지대 문제인데 본 장관으로서 2개 다 긴 호흡이 필요한 국가적 또 교육부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지대 문제는 이번에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 때 제가 답변했듯이 예의주시 하면서 이사들이 임무를 해태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 대학이 성실하게 국회와 또 교육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본 장관이 사퇴를 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걸 장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정부와 또 국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국정이나 검인정이나는 법률이 다 인정을 해 온 법령상 허용된 제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헌재가 헌법 합치에 대한 판결을 한 이상은 우리가 이제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검정이나 국정 어떤 것을 택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 책임하에서 결정을 한 이상 그 그릇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릇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 담길 음식까지 나빠질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부가 이왕 그렇게 했으면 잘 만들어 봐라’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실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시고 이래서 잘 교과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장

관으로서의 입장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정교과서로 된 이상은 약속한 대로 좋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세세한 데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허위나 또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특별히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교육부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사립학교법 43조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4조 그리고 별표 1에서 최근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리스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 명목을 내세워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학교를 제외시켰고 제가 각종학교를 제외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늘 하는 거고 결국 제가 그걸 지금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지금 광주에는 일종의 삼육학교라 그래서 정규중학교 교과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재정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정규중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전환하도록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각종학교의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정규 학교와 유사한 3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스스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이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각종학교를 이제 와서 제외시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실제 각종학교를 교부금 산

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사립학교법 제43조나 시도 조례에 따라서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량이 지금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교육부가 시행령에 실제 각급학교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광주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서울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또 경기도에 있는 삼육학교라든가 경북에 있는 삼육학교 이런 경우도 지금 다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광주가 시범사례가 되어 있어요. 각종학교 재정 지원에서 제외할 거냐라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광주에서 이번에 이것이 재정 지원에서 배제가 되면 다른 교육청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셔야 되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법률안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박혜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여건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맞춰 보겠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박혜자 위원 아니, 시행령을 고쳐 주면 되거든요. 시행령을 지금 개정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5호에 따른 각종학교' 이렇게 해 놔어요.

예전 같으면 시행령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각종학교를 넣어 버렸어요. 전부 리스트를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차까지 와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장의 문제가 발발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부에서 스스로 시행령을, 그 부분을 제외해 주면 문제는 종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 법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자체 교육청에서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법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각종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경제 등의 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에 또 이게 중학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각종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의무교육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각종학교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거꾸로 지금 중학교에 해당되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각종학교를 이제 제외해 나간다는 것은 지금 거꾸로 가는 현상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그동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혜자 위원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정규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재량에 맡겼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고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세요.

제가 또 낸 법이 의무교육 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중단 하더라도 다른 의무교육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 학생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규 교과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3년제 중학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법에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령의 변천 과정을 검토해 보고……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안 되면 거기에

부수적인 행정조치라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법 논의하는 과정에 교육부의 방안을……

○박혜자 위원 여하튼 장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법으로 안 되면 시행령이라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믿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세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배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문체부장관께 먼저 제가 유감을 좀 표명을 하면요 사실은 예산소위를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진위 사옥 이전이라는 사업명 내에 종합촬영소 건축까지 같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기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을 전제로 논의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잘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실은 기금을 사옥 이전에 쓸 수 있는가를 놓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서 종합촬영소라도 먼저 짓게끔 도와주십사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진위 사옥도 이전하고 종합촬영소도 지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마는 우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영상콘텐츠밸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옥 이전이 더 급한 게 아니고 종합촬영소가 더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설득을 해서 종합촬영소부터 먼저 기금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정작 예결특위 소위에 가서는 기재부가 단칼에 잘라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때 당황스럽기도 했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문체부 예산소위에서 종합촬영소를 먼저 기금으로 사용하게끔 하

기 위해서 그 술한 논란을 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보류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원천적으로 겪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문체부와 기재부 사이의 소통 불능인지 아니면 문체부가 우리 교문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지 유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특별법을 낸 이유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에 대해서는 장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타 다른 도시에 있는 국제영화제를 결코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산국제영화제가 20년 동안 쌓아 왔던 그 위상이라는 것은 다른 영화제와 사실은 같이 놓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콘텐츠밸리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종합촬영소를 빨리 지어서 부산에 제대로 된 영상산업,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너무나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종합촬영소라도 먼저 기금으로 짓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막 전에 차관님께도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대의견을 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소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해마다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야당은 여당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진짜 잘 정리하시는 게 너무나 시급하다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요.

그 부분을 문체부도 책임감 있게 기재부를 지금이라도 설득하시고, 저는 저대로 또 우리 예산소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 위원님. 저희는 정말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문

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어떻게든 촬영소가…… 지금 영진위 사무실 때문에 촬영소를 짓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덧붙이면, 사실은 종합촬영소를 짓는 사업을 영진위 지방이전사업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진위 사옥 이전이라는 큰 틀로 덮어 버리니까 우리 국민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업 안에 종합촬영소를 별도의 부지에 짓는다는 내용을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영진위에서 사업 이름을 올릴 때부터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명확하게 종합촬영소 신축과 그다음에 영진위 사옥 지방이전을 별도로 갖어야지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나머지 법률과 관련된 것은 필요하면 서면질의하든지 아니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도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황우여 부총리님,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쭙 보겠습니다.

학계의 명망 높은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명망 높은 전문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명망 높은 전문가로서 지금 추진하고……

○도종환 위원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몇 명 소개할 수 있습니까? 명망 높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대표 집필자한 분은 이미……

○도종환 위원 아니, 그 사람 말고 추가로

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수준의, 그런 분들 수준의……

○도종환 위원 그런 수준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25년 전에 국정교과서 만든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요, 다른 것은 부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수준으로서……

○도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릇이 나쁘기 때문에 음식이 나쁜 것이다라고 예단하지 말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음식이 담기면 좋은 음식입니까, 나쁜 음식입니까? 나쁜 음식이지요, 그것은? 교과서에 그게 담긴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그 내용…… 음식이……

○도종환 위원 내용 중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내용이 담긴다면, 음식에 비유한다면 나쁜 음식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국편에서 하면서 사학계에 의논을……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일제 때 쌀을 수탈을 당한 게 아니라 수출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쓴다면 나쁜 음식이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편에서 지금 집필 중에 있고, 논란이 있을 텐데……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을 참여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역사교과서 만드는 데? 이 경제학자들이 과거에 2008년에 낸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라든가 2013년에 낸 교학사교과서 보면 이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논리가?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이번에 또 참여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반영되는 이유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장관으로서 친일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도종환 위원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이 역사를 기술했던 사람들이 경제학자였어요. 이들이 이번에 또 참여하는데, 그러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기술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집필진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국편에서 결정할 것이고……

○도종환 위원 아니, 경제학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어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이 경제학자들이 역사교과서 만드는 데 왜 들어갑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꼭 그렇게 단정하시지 말고, 근현대사 부분은……

○도종환 위원 아니, 이영훈이니 권희영이니 이런 사람들이 일제 때 쌀 수탈당한 것이 아니라 수출했다고 교과서에 그동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TV에 나와서도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교과서 만드는 데 경제학자가 참여한다는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지 말고, 장관으로서는……

○도종환 위원 그러면 왜 경제학자가 참여합니까, 역사교과서 만드는 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장관으로서는 친일 부분에 대해서는 못을 박아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집필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개발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배재정 위원님을 통해서 기본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본계획서 내면서 예산은 빼고 제출했더라고요. 내년 교과서 관련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번에 예비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냥 예비비로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2017년에 국회에 보고하시는 형태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저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개발 일정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집필 방향 또 집필 세목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결정되어야 되는데요. 집필 방향, 편찬 준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편찬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편찬 준거 만들면 공개하실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것은 적절히……

○도종환 위원 집필 방향 정해지면 공개하실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용어가 좀 달라지시는데, 교과과정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일 경우에는 편찬 기준을 정해서……

○도종환 위원 잠깐, 그러면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기에 보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자료에서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는 33단계의, 예산도 여섯 번에 나눠서 배정하는 저런 세세한 편찬 일정이 정해졌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중·고등학교는 세세한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개략적인 것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처럼 저 세세한 일정을 공개하실 것이지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책 만드실 것이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초등학교처럼, 저것도 교육부에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처럼 중·고등학교도 세세한 일정을 공개하실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실무진의 의견은 국정인 한은 같은 과정을 걷는다 이렇게……

○도종환 위원 같은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하나하나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하시겠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인 한은 같은 과정의 길을……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과정이 뭐예요?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초등학교 국정하

고 같은 과정을 걷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면 공개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도종환 위원 장관님!

○위원장대리 신성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실무진보고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종환 위원 아니, 언제부터인가는 계속 답변을 잘 못 하시고 뒤에 미루시고 그러시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이런 것을..... 장관이 그 세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여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바로바로 공개하시면서, 국민들 앞에 공개하면서 이 교과서를 만들어야지 올바른 교과서, 국민이 납득하는 교과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공개되는 이 절차, 공개한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종환 위원 이대로 공개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공개한 대로 할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공개한 대로는 너무 개략적이잖아요. 여기는 너무 개략적이고, 초등학교처럼 자세하게 공개하실 것이냐고 여쭙는 것인데, 어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종환 위원 다시 물어보고.....

예산도 안 밝히고, 세세한 세부 내역도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고.....

○도종환 위원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고등학교, 중등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정한다고 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정한다는 얘기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

에 따라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공개는, 이 절차 자체는 공개가 됩니다.

○도종환 위원 절차를, 예를 들면 제가 여쭙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초등학교 때 공개 절차를..... 지금 제가 실무진에 물어본 것은 ‘초등학교 절차 그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고.....

○도종환 위원 똑같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지는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똑같은지는 아니고.....

○도종환 위원 현장 검토분 뭐, 이런 것 다른 부분도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초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차이가 현장검토라는 과정이 있는데, 중등부에는 그것이 필요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초등도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도 일정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마다 자료를 이 33단계는 아니겠지만 단계 단계별로 자료 요청하면 주시고 투명하게 하시겠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라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절차는 같지는 않지만 중등 절차가 생기면 그 절차 자체는 공개가 됩니다.

○도종환 위원 공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위원장대리 신성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오늘 17시, 5시부터 시내 조선히otel에서 열리는 2015 메세나 대상 시상식에 대통령을 대신 참석해서 대통령 표창하고 또 장관 표창 시상식에 가야 되어서 이석을 요청해 와서 여야 간사가 양해했음을 알리고.

지금 출발하시지요, 뭐. 4시 20분까지 기다렸는데. 장관 이석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장관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차관님들은 계시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여쭙게

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누가 누구한테?

○도종환 **위원** 아니, 문체부장관님은 가세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그래요. 문체부장관 나가시고.

마이크는 안 들어옵니다. 황우여 장관님.

○도종환 **위원** 아까 부총리님께서 제가 집필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필진에 대해서 여쭙어 보았을 때, 세세하게 여쭙어 보았을 때 그 세세한 자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명단이나 시기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은 지금 그것을 공개해서 준다는 약속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편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편위원장으로 하여금 집필진 관련된 자료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국편위원장한테 다 공개하라고 말을 전할 수는 없고, 그것은 국편위원장의 전권하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집필준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집필 방향 이런 것들 자료를 언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자꾸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그러시지 말고, 하여간 우리는 규정을 정하면……

○도종환 **위원** 당장 달라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어떤……

○도종환 **위원** 집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요구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이어서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아까 상지대학교 관련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부 감사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법률대리인도 지정하지 않고 어떤 의견서도 한 장도 내지 않아서 결과가 사실

상 무변론 패소를 했다, 이것은 교육부 감사 이행에 대한 불성실 이행일 뿐만 아니라 법인 이사회가 명확하게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하든지 하셔서 이사회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려고요.

그다음, 제가 예산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편에 위임된 편찬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별도로 국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의하면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신청·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5년도 예산을 살피면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사실상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기재부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뭐 하러 이런 지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지침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지침 만들고, 정부는 안 지켜도 되고,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어겼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겼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가는 정부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안 상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 회계직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11개 대학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예산소위를 할 때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어떤 불이익

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조정신청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업에 들어갈 테 세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명백하게, 교육부가 책임을 가지고 국립대학들을 지도하셔서 근무조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이 방과후학교를, 8조1항에서 후단 방과후학교를 삭제했더구먼요.

이 공교육 정상화법,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행학습의 문제점과 사교육의 팽창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조치로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제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에 맞게 제반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정안에서처럼 방과후학교 전체를 제외하게 되면 초·중등학교에서, 모든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을 활짝 열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교육 정상화법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좀 더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의 동계방학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을 하셔야지요. 전체 방과후학교를 다 열어 버리면 어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요. 그러면 사실 공교육 정상화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제2항1호를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조정하는 개정안인데, 사실은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2005년 수준으로 낮추어서 현재의 절반 정도 받자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수도권 일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농어촌 지역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가해서 굉장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학교 신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역시 문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인성교육진흥법 여기에 보면 인성교육 담당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아니,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교과목에 한정되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수학교과 시간에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음악교과 시간에도 필요한 것이고, 체육교과 시간에도 필요한 것이고, 조희나 종례의 학생지도에도 필요한 것이고,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잠깐 훈화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성교육 담당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성교육 담당이 누구인지 어떻게 가려 냅니까?

그리고 승진가산점, 이게 뭐 대학총장 직선제 하고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언급했습니다마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적절하게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강제하는 것, 특히 승진가산점으로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강제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인성교육 자체를 역으로, 거꾸로 바라보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이 문제 법안 심사할 때 적절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남자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한 3년이지요. 교육공무원법은 몇 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정진후 위원 1년입니다. 개정이 안 됐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래서 이걸 3년으로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정진후 위원 차이가 있어요. 지금 국가공무원법 보면 육아휴직 최장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교육공무원법은 같이 고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1년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차이가 있다면 같

이 하는 게 옳다고……

○정진후 위원 그걸 같이 맞추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지금 확인한 후에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방과후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으실까 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의 핵심이 공부를 어떤 학생이나 어떤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데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육을 정규교육에서는 최소한도 시켜야 되고, 가장 핵심이 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원칙으로 하고……

그런데 방과후 부분을 묶어 봤더니 그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광정을 하자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를 묶어 놔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풀어 버리게 되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어서 대부분의 모든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사실상 11월 달에 수능이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 학과를 다 끝내야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겨울방학부터는 이 과정을 좀 더 앞당겨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형태까지를 다 풀어 버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자체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본질이 평

가는, 선행평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나 또는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정규교육에서는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상당히 큰……

○정진후 위원 장관님, 평가와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거지요.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가는 하지 않는다, 이건 전연 다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평가가 없기 때문에 방과후나 또 다른 사교육에서 선행학습 할 필요가 근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요.

○정진후 위원 그건 전연 다른 겁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뭇 하러 이걸 만들었어요. 선행학습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으로 국가가 뚜벅뚜벅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따르는 정규교육과 그다음에 평가를 시험문제나 이런 데서는 교육과정에 따르는 선행학습을 도외시하고 정규적인 것만 하겠다 그 애기지요.

○정진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다 해도 되는 것이고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까지 다 해도 되는 것이다, 평가만 안 하면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려면 각 학년별로, 학기별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이 뭇 때문에 필요가 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진후 위원 아니,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걸 풀어 가지고 방과후학교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방과후에서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규제하지는 않고 정규교육에서 틀을 잡은 후에 평가도 그 안에서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정진후 위원 그건 전연 다른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그런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
○**위원장대리 신성범** 질의하시는 정진후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황우여 부총리님의 취지 같은 것은 아마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장관님,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오늘 또 많이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보는 시각에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판단 여부는 각각 위원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고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은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최대한 융합이 되어서 좋은 교과서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느 특정 한 종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과서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위원**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식민지 근대화론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 식민지 근대화론조차도 다름..... 교학사 교과서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다른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다수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자료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지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편이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독재 미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새누리당 위원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최단 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둬 경제대국에서부터 복지, 그리고 군사,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내용들이 폄하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교

과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긴 하지만, 대개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역사 교과서는 사건과 인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과 인물의 비중이 어떤 여부인지에 따라서 균형적인 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축소하고 무엇을 생략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국편위원장께 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국편에서 여러 가지 집필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가 된 듯한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도, 물론 최몽룡 교수의 사태는 이러한 내용과 좀 궤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물망에 오르는 여러 명망 있는 사학자들에게는 미리 제자들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자나 집필진이 노출이 되면 가시화되어서 궁극적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국편은 지금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잘 정리하고 행정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만 이게 최소한 특정한..... 우리가 작품으로 따지면 초벌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집필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소신껏 집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교육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런 부분이 우려가 큼니다.

○**강은희 위원** 국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2004년 근현대사 교과서가 나오고 그 이후로 2008년, 2011년, 2014년 과정을 통하면서 집필진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대표 집필진을 비롯해서 각 교과서마다 집필진들이 유사하게 움직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판사만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집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집필진들이 구성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이 어떤 특정한 학설이나 이런 것을

적시하시면서 그것 따르겠냐 안 따르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제가 국편위원장과 국편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즉답을 안 했는데, 그러한 많은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국편에서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라는 편향성이 없는, 잘 만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장관으로서는 친일·독재 미화는 결코 없다, 생각도 안 한다 이런 대강령을 국민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선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은희 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사 교과서의 논란은 세 가지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친일—이고 독재 미화, 그리고 좌편향 종북사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교육부도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 제가 주최하는 토론회 때문에 주질의 시간에도 없었고 이제 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할 말씀이 많습시다만 앞에 동료 위원들이 하도 떠들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문체부 1차관 소관인가, 산지관광법 말이지요. 그것 2차관 소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유인태 위원 규제라고 하는 게, 한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규제가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아주 걱정스러운 것은 모든 규제는 다 암이다 이런 철학하에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규제조차도 다 풀어 버리고……

설악산 케이블카도 그렇지만 산지관광 활성화라는 것도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산림에조차도 대기업들이 가서 그냥 난개발할 우려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수용권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저는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기우이고 오해라고 하는데, 진짜로 불필요한 규제들이 꽤 있지요. 그런 건 우리가 풀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우리가 절대 풀어서는 안 될, 공동체를 위해서 풀어서는 안 될 게 있거든요.

지금 그 법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산지나 백두대간 이런 데까지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요, 산지관광. 그리고 거기다가 토지 수용권까지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유인태 위원 법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를 얼마든지 갖게 하는 법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자연공원 내에는 지정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정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 시험림, 자연공원, 습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저희가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유인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인근 주민들하고 상당히 새로운 갈등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제발 세금을 일부 낭비한 것은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삼천리금수강산 계속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것 난 이 정부하에서 너무 많이 훼손시키고 파괴하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것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정말 민심을 잘 듣고 교과서처럼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짓 하지 마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정진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대리 신성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는 모양이지요?

○정진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성범 그렇게 하시지요.

○정진후 위원 제 질의가 교육부장관님께 계속 집중이 됩시다라는 국정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시국선언 했던 교사들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전원은 아니고 그

것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진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기존에 법률 검토를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교과서는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먼저 접해서 사용해야 되는 당사자들이예요. 이분들이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으로 다른 형태의 선언이나 이런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서서는 안 된다는 것, 장관님의 위치나 역할상 국정 교과서를 불가피하게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여건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징계로까지 책임을 맡으신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평가가 또다시 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교사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견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또 하려면,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게 늘 지적을 합니다마는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9월 23일 ‘국정화 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 이런 게 있었는데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국정화 역사교과서 반대에 대한 선언이 불법이다’, ‘왜 불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여야가 침묵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주장에 대한 지지 및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면 이건 징계감이고, 여당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면 이건 징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서 저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은 엄정한 법적 판단과 자문을 받아서 교육부가 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법에 위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른 형태의 선언

이나 이런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건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이고 교사들은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다, 왜?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기하는 것 자체까지를 봉쇄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압력이고 또 다른 차원의 징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끝까지 소신을, 지적하는 내용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가져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 중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것과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경청은 생략합니다—윤관석·김희선·이종훈·박홍근·도종환·유은혜·유기홍·설훈·박주선·박창식·이상일·안홍준·조정식·문대성·배재정·정진후·유인태·강은희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년 위원께서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우여 사회담당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김종덕 장관님, 나선화 청장님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강은희 김태년 김학용 김희선
도종환 문대성 박대출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용교	설훈	신성범	안민석	사무처장	박성기		
안홍준	염동열	유기홍	유은혜	문화재청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재옥	청장	나선화		
이상일	이종훈	정진후	조정식	기획조정관	나김성기		
○청가 위원(1인)				문화재정책국장	박이경		
박인숙				문화재보존국장	김홍대		
○출석 전문위원				문화재활용국장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이정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 장관		황우여					
차관		이영복					
기획조정실장		김관동					
학교정책실장		김동석					
대학정책실장		한신익					
정책기획관		오승걸					
학교정책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		박전우					
학생복지정책관		배성민					
대학정책관		홍은옥					
대학지원관		최용배					
학술장학지원관		승경희					
지방교육지원국장		박성민					
평생직업교육국장							
교육안전정보국장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제1차관		박민권					
제2차관		김종근					
기획조정실장		송수병					
정책기획관		최형호					
문화정책관		우상일					
예술정책관		박위진					
문화기반정책관		김현모					
저작권정책관		박용철					
미디어정책관		심동섭					
체육정책관		김영수					
체육협력관		김철민					
관광정책관		이병국					
관광레저정책관							